

2018년

센터연구과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 연구



2018.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구진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 연구」

LIMAC 연구진: 여규동 수석연구원(연구 총괄)
최성원 전문분석원
조현민 전문분석원

목 차

제 I 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제 II 장 관련 법령·지침 검토	9
제1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2
제2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4
제3절 소결	15
1.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구성의 불일치	15
2. 이력관리 업무수행 기관의 근거 결여	17
제 III 장 이력관리 업무 수행체계 분석	19
제1절 이력관리 절차	21
제2절 사업정보 입력 절차	24
제3절 소결	26
1. 사업정보의 입력기준 부재	26
2. 이력관리를 위한 사업정보 DB 구축 및 관리 체계 부실	27
3. DB 활용의 제한성	29
4. 사후관리단계의 평가체계 불완전성	32
제 IV 장 이력관리 DB 현황 분석	37
제1절 이력관리 대상사업	39
1.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사업	40
2. 사후관리단계	46
제2절 이력관리 DB 구축 현황	47
1. 준비단계 DB(2013~2016년)	47

목 차

2. 준비단계 DB(2017년)	48
3. 추진단계 DB(2013~2016년)	50
제3절 소결	51
1. 사업정보 입력 시 오류 및 검증 과정 부재	51
2. 변경 및 중단 사업의 처리 방안 부재	52
제 V 장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개선 방안	53
제1절 사업정보 DB 구축체계 개선	58
1. 사업정보 입력방식 및 항목 개정	58
2.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 개발	62
제2절 이력관리 업무체계 정비	67
1. 이력관리 업무수행 체계 개선	67
2. 사업정보 DB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70
3. 이력관리 범위의 재설정	74
제3절 기타 제도개선 제언	75
1. 내용변경 사업의 관리 강화	75
2. 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조정	77
3. 이력관리 성과물 제공 업무 반영	80
4.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81
제 VI 장 결론	8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5
제2절 향후 연구과제	88
참고문헌	89
<부록 1>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업정보 DB항목 비교	90
<부록 2> 이력관리 관련 심사규칙 및 매뉴얼의 주요내용	94

표 목 차

<표 I-1>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체계 구축을 통한 기대 효과	5
<표 II-1> 심사규칙의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내용	12
<표 II-2> 심사규칙과 매뉴얼 비교	16
<표 III-1> 2차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1차평가 기준	23
<표 III-2> 사업정보 입력단계 비교	24
<표 III-3> 단계별 이력관리 대상 및 운영주체(시흥행정타운)	34
<표 IV-1> 시도별 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40
<표 IV-2> 시도별 2013년~2016년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현황	41
<표 IV-3> 분야 부문별 투자사업 현황	42
<표 IV-4> 분야별 총사업비 분포	44
<표 IV-5> 2013~2016년 통과사업 준비단계 입력사업 검토 결과	48
<표 IV-6> 2017년 통과사업 준비단계 사업정보 검토 결과	49
<표 IV-7> 2013~2016년 통과사업 추진단계 사업정보 검토 결과	50
<표 V-1> 주요 쟁점별 개선 방안 도출	56
<표 V-2> 이력관리 업무 관련 용어 변경(안)	70
<표 V-3> 심사 제외 대상사업 리스트	77
<표 V-4> 단계별 업무 및 수행 절차	81

그림목차

[그림 II-1] 현행 투자심사 통과 이후 이력관리 사업단계 범위	11
[그림 II-2] 현행 이력관리 업무의 추진 절차	14
[그림 III-1] 투자사업 단계 및 단계별 사업정보	22
[그림 III-2] 현행 핵심정보(사업정보) DB 구축업무 추진 절차	28
[그림 III-3] 현행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자치관리계획 관련 업무 추진 절차	28
[그림 III-4] 기존 DB(준비추진단계_사업량.xls) 화면	31
[그림 IV-1] 사업 규모별 대상 사업 건수	45
[그림 IV-2] 사업 부문별 대상 사업 건수	45
[그림 V-1] 이력관리 DB 작성을 위한 엑셀파일 전체 화면	60
[그림 V-2]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 초기화면	62
[그림 V-3]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 파일등록 화면-1	63
[그림 V-4]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 파일등록 화면-2	64
[그림 V-5] 검색 기능 선택 화면	64
[그림 V-6] 선택된 사업의 DB구축 진행 화면(개별 엑셀양식 정보 ⇒ 시스템 DB 구축)	65
[그림 V-7]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 파일등록 후 조회 화면	65
[그림 V-8] 이력관리 DB를 엑셀 파일로 저장한 화면	66
[그림 V-9] 주체별 이력관리 업무수행 체계도	68
[그림 V-10]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추진절차 및 범위 변경	69
[그림 V-11] 준비단계 사업정보 DB 구축 절차	71
[그림 V-12] 개선(안) 반영 시 간소화된 업무수행 절차	72
[그림 V-13]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자체관리계획 업무 세부 절차	76
[그림 V-14] 이력관리 제도 완성을 위한 정보제공 업무 반영의 개념도	80

제 I 장 연구 개요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지방재정법 제37조)를 도입하였으며, 자치단체는 투자심사 통과 이후 사업 예산편성 및 추진이 가능함
 - 따라서 투자심사가 통과된 사업은 심사 시에 계획된 사업내용 및 재정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그러나, 투자심사 통과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 지연·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¹⁾하며, 이는 자치단체 재정운용 차질 및 손실 발생으로 연결됨
 - 사업 준공까지 장시간 소요, 잦은 사업담당자 교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에도 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며, 심사 시의 사업내용과 달리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음

1) 2018년 사업 변경·지연·중단 사례

- ○○시는 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이후 시설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지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면적 증가, 총사업비 20억원 증가 및 설계용역 착수 지연 등으로 이어짐
- △△시는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도로 선형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는 38억원 증가하고 일정은 3년 6개월 지연됨
- □□사업의 경우 예산미확보에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사업폐지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국제비즈니스파크 공사의 경우, 해당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시설 설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지연주민이 사업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폐지됨

- 즉,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일목요연한 추진 현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5년에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를 도입하여 사업 단계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투자심사 제도를 벗어나는 사업에 대하여 제도권 내로 회귀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참고로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현황을 살펴보면, 적정 등으로 승인된 총 사업건수는 4,400건, 금액은 40조 9,751억원이며, 중앙심사 422건(16조 6,690억원), 시도심사 1,346건(12조 6,890억원), 시군구심사 2,164건(11조 6,171억원)에 달함
- 본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①자치단체가 입력한 DB의 신뢰성, ②신뢰성 있는 DB구축을 위한 입력·분석·출력 체계의 적정성, ③1차(자체평가) 및 2차(중점관리사업 선정) 평가를 위한 기준의 적정성, ④구축된 DB와 평가 기준과의 부합성, ⑤구축된 DB의 다양한 활용가능성, ⑥추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이력관리 대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수행체계 등이 확보되어야 함
 - 위에서 언급한 업무 수행자는 시군구 및 시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위원회, LIMAC 포함)로 이해당사자가 매우 많다는 점, 일목요연하게 관리해야 할 사업 대상이 많다는 점, 연차별로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계·관리하고 구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 초기에 체계적인 업무 수행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투자심사 통과 이후의 재정투자사업 주요 사업정보(DB)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DB 입력에서부터 중점관리사업 선정, 자체관리계획 수립까지 이루어지는 이력관리 업무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심사규칙, 업무수행 매뉴얼, 실제 업무 수행체계 및 내용을 검토하여 제도와 실제 업무가 통일성을 갖추고,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개선하고자 함
- 이를 통해 ①투자심사 이후의 사업추진과정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②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력관리 업무의 본 취지인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사업을 도출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 나아가 전 지역에서 실시된 투자사업 현황 및 정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및 국가재정운영의 효율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체계가 구축된다면, <표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력관리 성과물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표 I-1>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체계 구축을 통한 기대 효과

구분	활용
시군구/시도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화된 사업 일정, 예산 등의 계획을 예산부서, 행정안전부 등과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사업담당자 변경 시, 사업 내용 및 추진 경로를 용이하게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 ■ 신규 사업 계획수립 시, 타 자치단체 포함 기존 유사사례정보 검토를 통한 사업 중복성 배제(또는, 차별성 강화) 가능
시군구/시도 예산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별 추진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사업별 연간 재정관리(예산, 결산, 추경 등) 등에 활용 가능 ■ 지방채 발행 사업, 채무부담행위 포함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 인지 및 효율적 관리 가능 ■ 사업 추진 및 운영 부진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 마련 및 관리 가능 ■ 시도의 경우, 시도비 지원 규모, 지원 여부 판단(예하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등)에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여부 판단 시점인 '투자심사' 이후의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활용 ■ 국가 차원에서의 각 자치단체별 추진 사업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에 활용 가능
정부 부처 (국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투입 사업의 실제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향후 국비 배분 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 ※ 추진/운영 부실 자치단체 파악, 지원 부처의 국비 지원 규모 적정성 검토(ex,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활용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적정, 조건부로 결정)된 사업은 이력관리를 위해서 주요 사업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기 입력된 2013년 ~ 2017년 통과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
 - 2013년~2017년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자체투자심사 대상 포함)과 중앙투자심사 완료(적정, 조건부로 결정된 사업)된 사업이 대상임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제도 도입 시에 향후 관리 대상을 500억원 미만의 자체심사(시·도, 시·군·구)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이력관리 대상인 ①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자체심사 포함), ②중앙투심사업으로 설정함
 - 금년도 이력관리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1차 및 2차 평가를 진행해야 하므로 연구 대상을 2017년까지로 한정함
- 연구 범위의 큰 틀은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사안에 따라 대안을 도출하는 것임
 - 또한 매뉴얼 상의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실시(전체 투자심사 사업 대상)’ 업무와 본 ‘투자사업 이력관리(투자심사 통과사업 대상)’ 업무의 관계 설정을 포함함

2. 연구의 방법

-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이력관리 업무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준비단계(투자심사 시 사업내용)는 투자심사 의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e-호조시스템 상으로 사업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의 부재로 인해 구축된 DB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 사업정보 항목은 2015년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설정된 것으로서 이력관리

- 취지 및 평가기준 부합성 등을 고려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력관리 대상 사업으로 1차(자체평가) 및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진단계에 한정된 내용으로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 대한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준비단계에서는 1년 단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나, 매뉴얼 상으로 추진단계(준공 전까지 사업 추진 과정)와 운영단계(준공 후 운영단계)에서는 각각 분기별 및 반기별로 주요 사업정보 입력 시기와 횟수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는 e-호조시스템을 통해 주요 사업내용을 입력하나, 접근 권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KLID)에서 가지고 있어 LIMAC이 중점관리사업 선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DB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KLID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등 절차 상 복잡한 측면이 있음
 - LIMAC에서 자료를 검토 후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e-호조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는 상황으로 수정된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어려움
 - e-호조에 의해 구축된 DB의 output 파일에 대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서는 검토자가 수작업으로 DB를 재구성해야 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므로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낮음
-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지침, 현재 이력관리 업무체계, 이력관리 DB 구축현황을 검토·분석하여 앞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와 관련된 법령·지침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2017.12)이 있으며, 2장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분석함
 - 3장에서는 현재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절차, 사업정보 입력절차를 분석하여 현재 이력관리 업무 수행체계의 한계점에 대해 분석함
 - 4장에서는 2016년부터 축적된 이력관리 DB 구축 현황을 검토함
 - 5장에서는 관련 법령·지침, 현재 이력관리 업무 수행체계, 이력관리 DB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DB 입력 절차 및 수행 체계를 제안함

제 II 장 관련 법령·지침 검토



관련 법령·지침 검토

- 투자심사 제도 및 이력관리 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령은 각각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임
- 이력관리 업무의 수행 지침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하 매뉴얼)』(행정안전부, 2017)이며, 동 매뉴얼에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추진 절차가 제시, 주요 사업정보 입력 내용 및 방법, 평가 주체 및 대상, 보고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지방재정법」은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법률이며, 「지방재정법」 상에는 투자사업 이력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없음

[그림 II-1] 현행 투자심사 통과 이후 이력관리 사업단계 범위



제1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의 제2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사업²⁾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준공 후 운영 단계별로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하여야 함
 - 또한,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표 II-1>는 심사규칙의 투자사업 이력관리와 관련한 내용이며, 투자사업 이력 관리는 2015년 12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호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의 제2항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음
 -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와 시·도 및 시·군·구는 투자심사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체별로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었음
 - 제2항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사업 심사 후 추진단계별로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토록 하며, 대상사업의 규정함
 - 이후 2017년 12월 투자심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조언·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함

<표 II-1> 심사규칙의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내용

구분	이력관리 관련 내용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01.4.6]	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투자심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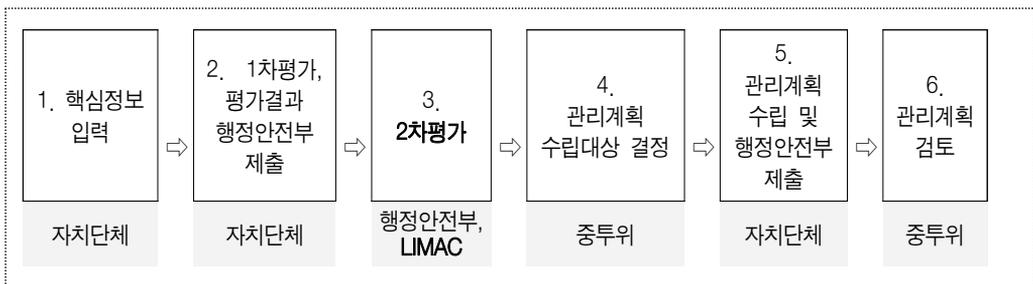
2) 1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호-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구분	이력관리 관련 내용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11. 1. 1] ~ [시행 2014.11.29]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15.12.24] ~ [시행 2017. 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18. 1. 1]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권고할 수 있다.

제2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2017.12)에 따르면, 투자심사가 완료(적정, 조건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투자사업 단계별로 핵심정보³⁾를 입력하도록 함
 - 이때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예산부서 검토)는 e-호조시스템에 주요 사업 내용을 입력하여 광역 및 중앙으로 전송하고, 이를 전산화 관리하게 되어 있음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심사 통과 이후에 진행된 내용(사업추진단계)에 대하여 차년도에 투자심사 시 계획되었던 사업내용과 비교검토를 통해 1차 평가(자체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준비단계와 마찬가지로 e-호조 시스템에 주요 사업내용을 입력하여야 함
 -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하 LIMAC)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가 수행한 1차평가 결과를 토대로 2차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중점관리사업을 최종 확정함
 -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관리계획이 부실할 경우 보완을 요구함

[그림 II-2] 현행 이력관리 업무의 추진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17

3) 매뉴얼의 ‘핵심정보’라는 용어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매뉴얼에 제시된 ‘핵심정보’를 ‘사업정보’으로 변경하여 기술함. ‘사업정보’는 의뢰서에 반영된 다양한 사업 관련 내용 중에서 이력관리 제도를 위해 별도로 선정된 주요 사업내용(총사업비, 일정 등)을 의미함

【 제3절 】 소결

1.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구성의 불일치

- <표 II-2>의 이력관리 관련 심사규칙 및 매뉴얼의 주요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규칙과 매뉴얼에 제시된 업무를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업무 내용, 업무 수행 주체, 대상 사업 등에 있어서 심사규칙과 매뉴얼 간에 상호 연계성이 부족함
 - 심사규칙 제9조 1항, 2항과 매뉴얼 10(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실시), 10-1(투자사업 이력관리)에 모두 평가를 언급하고 있음
 - 심사규칙 제9조 1항은 매뉴얼 10(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실시)과 관련된 내용이며, 2항은 10-1(투자사업 이력관리)와 연관됨
 - 그러나, 두 업무(㉠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실시와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도입 목적과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 업무 범위 및 내용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에 의거하여 (시도심사 및 시군구심사)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사후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적용 대상은 투자심사를 수행한 모든 사업임

〈표 II-2〉 심사규칙과 매뉴얼 비교

구분		심사규칙	매뉴얼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대상사업	투자심사사업 (중앙/ 시도/ 시군구)	최근 3개년 투자심사사업 (중앙/ 시도/ 시군구)
	수행주체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좌동
	평가내용	예산반영율, 사업추진현황 등	예산반영율, 조건부사업 조건이행율, 재검토 예산반영율 등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 or 투자심사사업(중앙)	좌동
		투자심사 전, 완료된 사업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 (적정, 조건부로 결정된 사업)
	입력주체	지방자치단체	좌동
	평가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LIMAC 포함)
	평가내용	사업단계별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 평가	1차
2차			LIMAC의 사업평가 절차

- 일반적으로 법률은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루어지며, 심사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규칙에 해당하며, 매뉴얼은 심사규칙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사업 및 사업범위가 서로 상이함
 - 즉, 위계상으로 심사규칙이 매뉴얼보다 상위개념으로 매뉴얼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다만, 투자사업 이력관리에서 대상사업을 규정할 때, 심사규칙과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범위가 상이하어 어떤 기준으로 이력관리를 수행해야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심사규칙에서는 투자심사 전, 후 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매뉴얼에는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 중 적정과 조건부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사업 이력관리’와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간의 대상사업 및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평가주체에 대해서도 심사규칙과 매뉴얼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일관성을 갖추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이력관리 업무수행 기관의 근거 결여

- 심사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매뉴얼에는 1차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2차평가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하여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하게 되어 있음
-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LIMAC이 사업정보 DB구축 및 관리, 1차평가 결과 검토,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자치단체 소명자료 검토, 최종 중점관리사업 선정, 자치단체 자체관리계획 검토 등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매뉴얼 상으로 LIMAC에 부여된 업무는 2차평가(중점관리사업 선정)이므로 LIMAC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같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 담당자 및 예산부서 담당자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제 Ⅲ 장

이력관리 업무 수행체계 분석



이력관리 업무 수행체계 분석

【 제1절 】 이력관리 절차

-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 절차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2017)에 제시되어 있음
 - 이력관리 업무의 추진 절차는 [그림 II-2]과 같으며, 본 업무는 ‘사업정보(현, 핵심정보) 입력’에서 시작됨
 - 1차평가(지방자치단체)와 2차평가(행정안전부·LIMAC)를 통해 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자체관리계획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며,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입력된 주요 사업내용의 수준에 따라 평가(1차평가=자체평가, 2차평가=중점관리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되므로 ‘사업정보’를 입력 하여 DB로 구축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그러나, 매뉴얼에는 사업정보의 입력 주체만 간단히 제시되었으며, DB관리 체계(주체 포함)가 제시되지 않음
 - 매년 구축되는 사업의 수가 매우 많다는 점과 하나의 사업정보가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다음 년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구축된 사업정보의 양은 상당하며, 이력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별 수행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매뉴얼상으로 사업정보는 1단계(사업준비), 2단계(사업추진), 3단계(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제시되어 있음
 - 사업준비단계는 투자심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입력항목과 입력시기는 상이함

[그림 III-1] 투자사업 단계 및 단계별 사업정보

심사완료 전	⇨	심사완료 후	
		준공 전	⇨ 준공 후
[1단계] 사업준비	[2단계] 사업추진	[3단계]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책임자 ■ 투자심사 및 사업내용 ■ 타당성 조사 결과 ■ 투자심사결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책임자 ■ 사업추진일정, 사업비투입현황 ■ 지방채발행현황 ■ 사업계획 변경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책임자 ■ 자산, 운영방식, 관리인력 등 ■ 수익, 연간이용현황, 관리비 등 ■ 지방채 상환현황 등 	
■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 분기별 입력	■ 반기별 입력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17

- 매뉴얼 상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입력은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후 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가 e-호조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관리하도록 함에 따라⁴⁾ 예산부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함
- 1차평가는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을 검토하여 2차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차평가 결과를 e-호조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입력 자료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2차평가를 추진함
 - 2차평가는 LIMAC의 평가 절차를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결정함

4) 2017년에는 e-호조시스템을 통해 DB를 구축하였음

〈표 III-1〉 2차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1차평가 기준

구분	1차평가 내용
사업비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② 계획대비(투자심사 의뢰서) 재원별 사업비 투입계획이 10% 이상 변동이 있는 사업 ※ (예) 국비, 민간지원금액이 계획대비 10% 이상 증감, 지방비 부담이 계획대비 10% 이상 증감(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사. 총사업비'의 각 항목 관련)
	③ 계획대비(투자심사 의뢰서) 용도별 사업비 투입계획이 10% 이상 ※ (예) 공사비가 계획대비 10% 이상 증감(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2. 사업비 산출내역'의 각 항목 관련)
사업 내용	④ 투자심사 의뢰서의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계획 대비 실제 사업내용 및 세부추진내용에서 물량, 면적,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 (예) 동일 규모의 건물이라도 수혜대상자가 노인에서 청소년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사업 기간	⑤ 최종 투자심사 의뢰서 대비 공사완공연도가 변경된 경우
기타	⑥ 사업비 투입, 지방채발행 후 중단된 사업, 사업 관련 민원·소송이 존재하는 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투자심사 조건 이행여부 확인 필요 사업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17

제2절 사업정보 입력 절차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e-호조시스템에 투자사업 이력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업내용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서 관리하고 있음
 -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후 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스템 상의 문제로 사업부서에서 e-호조시스템에 바로 입력하고 있음
 - 사업부서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업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서버를 오픈한 경우에서만 입력이 가능하며, 이외 기간에는 입력이 불가능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절차상으로 e-호조시스템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가능하므로 투자심사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부서가 e-호조시스템에 사업준비단계의 사업내용을 입력(사업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함
- e-호조시스템 상의 사업정보 입력단계는 투자사업등록, 투자사업준비단계, 투자사업추진단계, 공공시설물등록, 투자사업사후관리단계로 총 5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 매뉴얼 상 제시되어 있는 3단계와는 명칭이 일부 상이하나, 큰 틀에서는 동일한 개념임

〈표 III-2〉 사업정보 입력단계 비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매뉴얼	-	사업준비	사업추진	-	사후관리
e-호조 시스템	투자사업 등록	투자사업 준비단계	투자사업 추진단계	공공시설물 등록	투자사업 사후관리단계

- 투자사업등록단계(이하, 등록단계)는 투자심사가 통과되기 전 투자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입력하는 단계로 등록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은 투자사업준비단계(이하 준비단계) 입력시 투자사업명을 입력하면 등록단계에 입력한 항목이 자동적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음

- 입력단계에서는 사업명, 회계구분, 지방채발행대상여부, 사업추진목적, 근거법령, 사업기간, 분야·부문 등을 입력할 수 있음
- 준비단계에 입력하는 주요 사업내용은 투자심사가 통과된 심사의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입력정보의 대부분은 투자심사 의뢰서의 내용과 유사함
- 투자사업추진단계(이하 추진단계)는 준비단계에 입력하는 항목과 유사하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입력토록 되어 있음
- 공공시설물등록단계는 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시설물별로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며, 투자사업사후관리단계는 운영시설의 시설·운영현황 정보를 입력함
- 등록단계, 준비단계, 추진단계는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사업단위로 정보를 입력하며, 공공시설물등록단계, 사후관리단계는 사업단위가 아닌 시설물별로 정보를 입력하고 있음

제3절 소결

1. 사업정보의 입력기준 부재

- 현재 매뉴얼 상으로 각 단계별 사업정보의 입력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추진단계’의 사업내용에 관한 기준년도가 설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DB 입력 시에 혼란이 발생함
 - 이에 DB로 구축되는 주요 사업내용의 통일성과 평가의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함
 - 준비단계 : 투자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 추진단계 : 분기별 입력
 - 사후관리단계 : 반기별 입력
 -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8년부터 중앙투자심사는 연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차수별로 심사 의뢰시기가 상이함
 - 추진단계 및 사후관리단계와 같이 분기별, 반기별로 입력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업무 가중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예를 들어, 2012년 12월에 준공된 경우 2012년에 대한 사후관리단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연 1회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년도 결산자료는 차기년도 7~8월에 공시하고 있어, 각 분기별로 해당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산을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또한, 추진단계와 사후관리단계의 사업정보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입력하도록 하나 실제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구축되더라도 준비단계의 사업정보는 1년 단위로 구축되므로 기간을 세분화한 주요 사업내용의 활용성이 낮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정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원활하게 추진되어 종료되면 상관없지만,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재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투자심사를 기준으로 준비단계를 입력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함

- 투자심사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당초 투자심사 결과를 준비단계로 입력하여 관리해야 하나, 사업내용이 완전히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사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당초와 재심사 의뢰서를 서로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이력관리 대상사업이 2013년 이후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13년 이후 재심사를 의뢰해 통과되었던 사업이 2012년 투자심사 통과 이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음
- 따라서 준비단계의 주요 사업내용을 입력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입력하는 담당자의 혼란을 배제하여야 함

2. 이력관리를 위한 사업정보 DB 구축 및 관리 체계 부실

가. DB 구축 및 관리 체계의 복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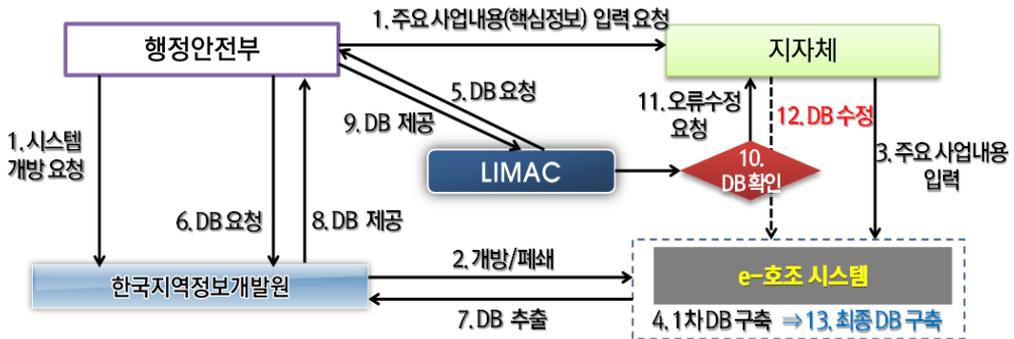
-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자체관리계획 관련 업무는 현재의 수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개별 사업별로 매년 연속적으로 사업정보에 관한 DB가 구축되고, 이를 토대로 중점관리사업 선정, 자치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한다는 점에서, 사업정보 DB 구축 체계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함
- 현재 사업정보를 입력하고 평가를 위한 DB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LIMAC,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수행하는 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주요 사업 내용 입력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되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e-호조시스템 개방 요청하게 됨
 - 자치단체에서는 개방된 e-호조시스템에 접속해서 각 단계별 사업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입력한 사업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DB로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음
 - LIMAC에서는 2차평가를 위해서 DB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게 되며, 행정안전부

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요청해 DB를 수령하고 다시 LIMAC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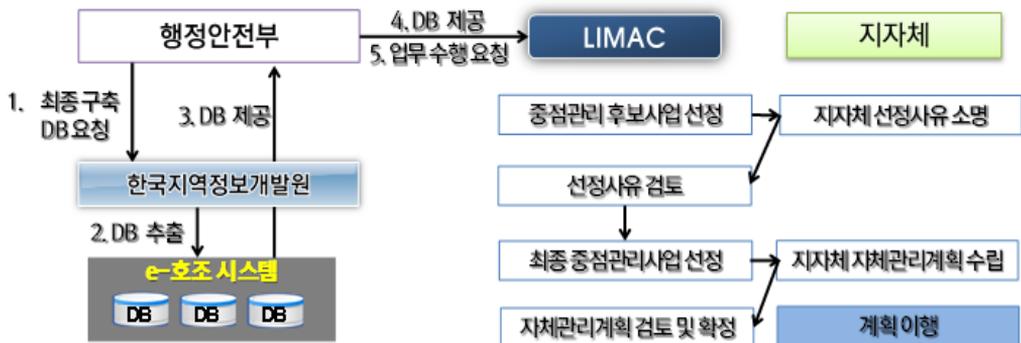
-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LIMAC, 행정안전부에서는 e-호조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임

-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한 DB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에 오류 수정을 요청하며, 자치단체에서는 e-호조시스템에 접속해서 해당 데이터를 수정함
- 이처럼 이력관리 업무의 절차 상, 입력시기, DB 확보, DB 수정 등과 관련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I-2] 현행 핵심정보(사업정보) DB 구축업무 추진 절차



[그림 III-3] 현행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자치관리계획 관련 업무 추진 절차



나. DB 구축 및 관리 주체 불분명

- 현재 매뉴얼 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가 예산부서의 확인을 거쳐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사업정보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임
 - 그러나 실제로는 시스템 상의 문제로 사업부서에서 e-호조시스템에 바로 입력하고 있음
 -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요 사업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서버를 오픈한 경우에서만 입력이 가능하며, 이외 기간에는 입력이 불가능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절차 상으로 e-호조시스템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가능하므로 투자심사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부서가 e-호조시스템에 사업준비단계 사업내용을 입력(사업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함
- 사업정보를 DB로 구축하더라도 최초 준비단계의 내용을 기반으로 1차 및 2차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차년도에 평가를 위해 다시 활용되어야 하나, 관리 주체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연결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함

3. DB 활용의 제한성

가. DB 확보 절차의 비효율

- 각 자치단체에서 입력한 사업정보에 대한 확인 및 평가(중점관리사업 선정, 자체 관리계획 검토 등) 분석 주체인 행정안전부와 LIMAC은 e-호조시스템에 접근하여 DB를 추출할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중점관리사업 선정 등 분석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KLID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DB를 LIMAC에게 전달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2017년의 경우, DB 확보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었음

나. DB 추출 결과 양식 복잡

- 이력관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다양한 분석 기능이 충분히 고도화되기 전까지는 KLID로부터 받은 DB를 엑셀로 전환하여 입력정보를 확인·분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현재 e-호조시스템에서 제공받는 자료는 사업 유형별, 투입재원별 구분항목이 다르고 입력내용 및 자료배열이 복잡하여 엑셀 함수를 적용한 자료정리가 거의 불가능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가 입력한 사업내용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비효율적임
- LIMAC에서는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하나, 이를 위해 DB를 재구성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함
 - 2017년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은 DB자료는 총 7개 파일(파일명 : 사업별, 사후관리단계, 준비운영단계, 준비추진단계_사업량, 준비추진단계, 등록내역, 최종투심년도별 건수)로 구성되어 있음
 - 단일 사업명으로 투자사업의 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각 단계별로 파일이 구분되어 있어 전처리 과정을 수행해야 함
 - 모든 자료가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어 동일한 항목에 대해 입력자마다 서로 다른 형식으로 입력(ex 날짜 입력 시 2018년 6월 27일, 2018-06-27, 18.06.27 등)하고 있어 수정작업이 불가피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제공한 기존 DB(준비추진단계_사업량.xls)를 보면 투자심사 실시시기, 절차이행기관, 결과, 조건 등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음
 - 엑셀 탭을 보면 준비단계와 추진단계가 구분되어 있어 단일사업의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는 이력관리 대상인 대상 사업건수가 기간이 지날수록 누적이 되는 형태이므로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분석 대안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투자사업 이력관리에서 1차, 2차평가를 위해서는 매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라.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불가능

- 현재 e-호조시스템 상에서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조건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은 자체평가표로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승인 조건이 사업정보 DB항목으로 설정되지 않아 실제로 조건을 이행했는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존재함
- 현재 투자심사 제도에서는 조건부로 통과되는 사업이 다수이지만 투자심사 이후 조건을 이행여부를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추진하던 사업이 재심사로 의뢰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심사 과정에서 조건 이행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음
- 2단계 심사 사업의 경우는 당초 투자심사 조건에 2단계 심사시 조건부로 통과하게 되어 승인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e-호조시스템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임
 - 2단계 심사 사업의 경우에도 재심사와 동일하게 어떤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조건부 사업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시 발생한 조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4. 사후관리단계의 평가체계 불완전성

- 투자심사 대상은 세출예산 구조상으로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등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을 의미하며, 심사 대상을 사업단위로 규정하고 있음
 -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된 경우를 의미함

- 이력관리 제도에서도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는 사업을 기준으로, 사후관리단계에서는 개별 시설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 상이함
 - 과거 정형화된 사업(도로, 환경기초시설, 수자원 등)은 주로 단일 시설물로서 시설물과 사업이 동일하였지만, 최근 복합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과 시설물을 동일시 여기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사후관리단계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후관리단계의 정보 수집의 한계가 존재함
- 평가의 명확한 목적 및 활용 방안 부재
 - 현재 이력관리 제도는 투자심사 통과 이후에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기타 주요 사항 등을 점검하여 예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함
 - ‘사후관리단계’의 이력관리를 수행하기에 앞서 ‘준비단계’의 운영계획과 실제 운영단계의 현황을 비교·평가하는 목적과 이러한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함
- ‘사후관리단계’의 사업정보 수집의 한계
 - ‘준비단계’와 ‘추진단계’에서는 하나의 사업단위로 주요 내용을 입력하지만, 사업 준공 이후에는 여러 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되거나 시설별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운영시설별 정보 수집에 한계가 존재함
 - 참고로 민간위탁, 분양,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어렵고, 제출하더라도 ‘준비단계’에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함
 - 투자심사 단계에서 설정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 투자심사 단계에서 계획 또는 예측했던 사업 시행 이후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하여야 하나, 관측 또는 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만이 아닌 주변 여건에 의해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마땅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LIMAC에 의뢰된 타당성 조사 사업은 복합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추진 주체와 운영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도 있음
 - 시흥행정타운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부서는 회계과이나, 개별 시설물의 운영주체가 상이하고 준공연도도 달라 해당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준비단계’의 운영계획과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임

〈표 III-3〉 단계별 이력관리 대상 및 운영주체(시흥행정타운)

준비단계	추진단계	사후관리단계	
추진주체	추진주체	시설물(준공연도)	운영주체
회계과	회계과	시청사(2024년)	회계과
		도서관(2022년)	중앙도서관
		보건소(2022년)	건강도시과
		중앙공원/체육공원(2022년)	공원관리과
		문화원/문화복지관(2022년)	문화예술과
		주민센터/일자리센터(기존시설)	-



□ 투자심사단계 계획과의 비교 실효성 미흡

- 투자심사는 개별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판단하고 사업추진 시에 유의사항을 체크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제도로 ‘준비단계’에서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투자심사 의뢰서 상 세부시설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시설물 설치계획, 수용인원, 운영주체만을 작성하게 되어 있음
 - 투자심사 이후 운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설은 설계과정에서의 변경사항, 준공 이후 사회적여건 변화, 주민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큰 운영계획을 최초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또한, 각 분야별·사업별로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이 다양한데 이를 몇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실태조사, 점검 등)와의 중복성 우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수행하는 각종 평가 및 실태조사와의 중복성 우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시행령 제37조의4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의 성과 및 사업 유지 필요성을 포함하는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5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공사내용 및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사후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재정통계 공공시설운영 현황, 문화기반시설총람 등의 통계에서 운영관련 정보를 매년 발행하고 있음

- 준비와 추진단계를 비교하고 평가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두 단계 모두 사업단위로 총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으로 검토가 가능하지만, 사후관리단계는 기존 단계에서 사업 단위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시설물별 검토는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사후관리단계에 대한 사업정보 DB를 구축하고 평가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단계도 이력관리제도 범주에 넣기 위해서는 입력대상(사업, 시설물), 평가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 IV 장

이력관리 DB 현황 분석



이력관리 DB 현황 분석

【 제1절 】 이력관리 대상사업

- 2018년도 이력관리 업무를 통해 관리되는 사업은 크게 2017년도에 심사를 통과한 준비단계사업과 2013~16년도에 통과한 추진단계사업으로 구분됨
 - 준비단계사업은 투자심사 시의 사업정보만 구축되며, 추진단계사업은 기 구축된 준비단계 사업정보에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정보를 더하여 구축됨
- 2018년도에 구축한 2017년 투자심사 통과사업의 준비단계 사업정보와 2013~16년 투심통과사업의 추진단계 사업정보의 DB 구축업무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한 주요정보 입력 요청_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505(2018.08.23.)』에 의해 시행하였음
 - 2013~16년 투자심사 통과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는 행정안전부의 시행공문에 의해 배포된 ‘추진단계 정보입력양식’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를 예산부서에 전달하고, 예산부서는 취합·정리하여 행정안전부로 최종 제출하였음
 - 시도가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는 최종 기한을 2018년 8월 31일까지로 지정하여 요청함
 - 2013~2017년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총 1,323건으로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IV-1〉 시도별 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단위: 건, 조원)

구분	총사업수	총사업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수	사업비								
합계	1,323	80.80	154	11.38	251	21.40	249	21.43	288	12.75	381	13.84
서울	69	6.21	6	1.08	10	0.99	14	2.11	14	0.77	25	1.26
부산	70	3.99	8	0.94	16	1.08	17	0.78	14	0.88	15	0.31
대구	59	4.49	6	0.47	8	0.49	16	0.70	20	2.46	9	0.37
인천	37	2.45	3	0.57	8	0.80	6	0.64	8	0.16	12	0.28
광주	40	2.65	2	0.19	11	0.46	11	0.89	8	0.26	8	0.85
대전	35	2.44	3	0.20	7	0.38	3	0.28	3	0.07	19	1.51
울산	45	2.15	7	0.70	4	0.35	13	0.59	9	0.20	12	0.31
세종	9	0.54	2	0.23	1	0.12	2	0.09	3	0.08	1	0.02
경기	274	32.21	38	3.36	56	12.11	35	11.11	59	2.60	86	3.02
강원	91	2.41	8	0.35	18	0.56	16	0.39	24	0.47	25	0.64
충북	80	3.34	11	0.68	15	0.59	15	0.40	15	0.97	24	0.71
충남	91	2.85	14	0.43	24	0.58	18	0.38	17	0.54	18	0.93
전북	75	2.70	6	0.56	10	0.44	17	0.44	13	0.44	29	0.81
전남	110	3.70	14	0.69	23	0.68	23	1.14	21	0.49	29	0.71
경북	127	4.07	16	0.53	19	0.50	23	0.56	33	1.24	36	1.23
경남	92	3.95	9	0.39	18	0.95	18	0.91	23	1.07	24	0.64
제주	19	0.65	1	0.01	3	0.31	2	0.04	4	0.06	9	0.23

※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중, 행사성 사업, 연구개발 사업, 기업지원 사업 등 이력관리 실효성이 없는 사업 제외

※ 자체심사 통과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포함

※ 경기도의 경우, `14년과 `15년에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포함

1.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 사업

- 이력관리는 투자심사를 통과한(적정, 조건부)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함
 - 즉,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모두 이력관리 대상이지만, 심사규칙 및 매뉴얼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규정함
- 심사규칙에 의거 투자심사가 제외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역시 제외되며, 현재 e-호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력관리 대상사업(2013년~2016년)은 942건임

- 당초 구축된 944건을 전면 재확인한 결과, 중복 등록, 투심미통과사업 포함 등의 오류가 포함되었으며, 이를 정리하여 총 942건을 관리하고 있음
- 심사주체별로 보면 중앙투자심사가 894건, 자체심사가 48건임
- 투자심사 통과 현황을 시도별 비중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88건(20.0%)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전남 충남 순임
-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시로서 8건(0.8%)임

〈표 IV-2〉 시도별 2013년~2016년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사업수	44 (4.7%)	55 (5.8%)	50 (5.3%)	25 (2.7%)	32 (3.4%)	16 (1.7%)
총사업비	4,946 (7.4%)	3,676 (5.5%)	4,121 (6.2%)	2,174 (3.2%)	1,794 (2.7%)	928 (1.4%)
지역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사업수	33 (3.5%)	8 (0.8%)	188 (20.0%)	65 (6.9%)	58 (6.2%)	72 (7.6%)
총사업비	1,837 (2.7%)	516 (0.8%)	29,187 (43.6%)	1,821 (2.7%)	2,633 (3.9%)	1,924 (2.8%)
지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사업수	46 (4.9%)	81 (8.6%)	91 (9.7%)	68 (7.2%)	10 (1.1%)	942 (100.0%)
총사업비	1,886 (2.8%)	2,996 (4.5%)	2,840 (4.2%)	3,311 (4.9%)	426 (0.6%)	67,016 (100.0%)

- 이력관리 대상사업의 분야 및 부문 분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게 되며 14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력관리 대상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및 환경보호가,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수질, 산업진흥고도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문화및관광 175건, 환경보호 173건, 국토및지역개발 137건, 산업·중소기업 139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 부문으로는 상하수도·수질 125건으로 가장 많고 산업진흥·고도화 95건, 지역 및 도시 87건, 도로 76건 순임

〈표 IV-3〉 분야 부문별 투자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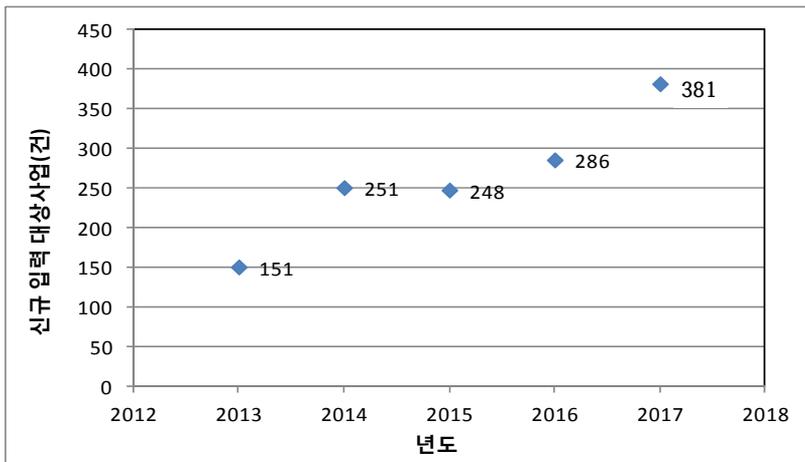
(단위: 건, 억원)

분야	부문	건수	총사업비	분야	부문	건수	총사업비
일반공공 행정 (47)	입법 및 선거관리	0	0	보건 (10)	보건의료	9	319,1302
	지방행정·재정지원	0	0		식품의약품안전	1	20,000
	재정·금융	0	0	농림해양 수산 (42)	농업·농촌	23	1,143,014
	일반행정	47	2,016,433		임업·산촌	7	119,200
공공질서 및 안전 (34)	경찰	0	0	산업·중소 기업 (139)	해양수산·어촌	13	425,617
	재난방재·민방위	21	544,693		산업금융지원	0	0
교육 (5)	소방	13	168,480.3		산업기술지원	20	738,467
	유아 및 초중등교육	0	0		무역 및 투자유치	3	174,600
	고등교육	2	68,700	산업진흥·고도화	95	3,696,073	
환경보호 (173)	평생·직업 교육	3	101,300	문화 및 관광 (17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5	430,152
	상하수도·수질	125	3,949,322		산업·중소기업 일반	5	113,900
	폐기물	30	1,330,518		문화예술	50	1,786,354
	대기	2	50,160		관광	52	1,889,746
	자연	10	235,616.6	체육	60	1,858,876	
사회복지 (46)	해양	1	14,000	수송 및 교통 (121)	문화재	3	76,330
	환경보호 일반	5	123,790		문화 및 관광 일반	10	253,994
	기초생활보장	0	0		도로	76	4,870,753
	취약계층지원	6	100,300		도시철도	15	12,760,865
	보육·가족 및 여성	3	240,224	해운·항만	1	35,400	
	노인·청소년	22	595,488	항공·공항	0	0	
	노동	0	0	과학기술 (13)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29	1,302,163
보훈	0	0	기술개발		1	28,400	
주택	14	1,899,737	과학기술연구지원		7	232,569	
국토 및 지역개발 (137)	사회복지 일반	1	36,900	예비비	과학기술일반	5	213,330
	수자원	8	206,200		예비비	0	0
	지역및도시	87	17,117,713	기타 (1)	기타	0	0
산업단지	42	5,676,530					

□ 이력관리 대상사업에서 비중이 높은 부문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추진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하수도·수질 부문은 상수도(정수장, 고도처리, 상수관로 등)시설과 하수도(하수처리 시설, 고도, 관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R&D사업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장비 구매와 연구동 등 건축 공사비용이 포함된 경우가 대다수임

- 해당 분야의 특이점은 타 부문은 시행주체가 대다수 자치단체이지만, 동 부문은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하고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 지역및도시 부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정비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임
 - 도로 부문은 도로(국도, 지방도 등)의 신설, 개량, 확장사업이 대다수임
 - 체육 부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센터, 운동장, 야구장 건립사업이 해당됨
- 이력관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기준으로 분석하면 2013년 151건, 2014년 251건, 2015년 248건, 2016년 286건, 2017년 38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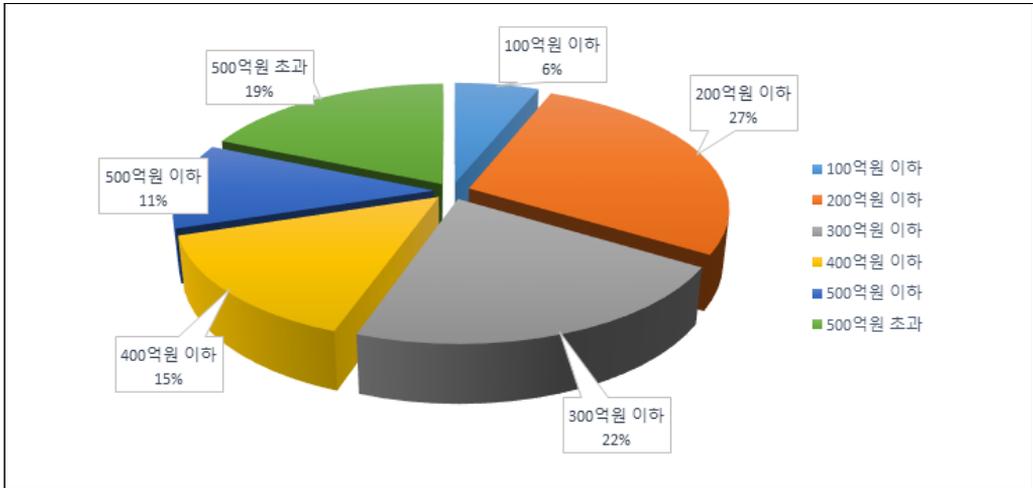


- 각 부문별로 총사업비 규모(100억원 단위로 구분)로 분류한 결과 부문별로 사업비 규모가 서로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한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부문의 경우 총사업비 200~300억원 규모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환경, 해양수산, 사회복지 부문에 비해 토목관련 사회기반시설이 단위당 총사업비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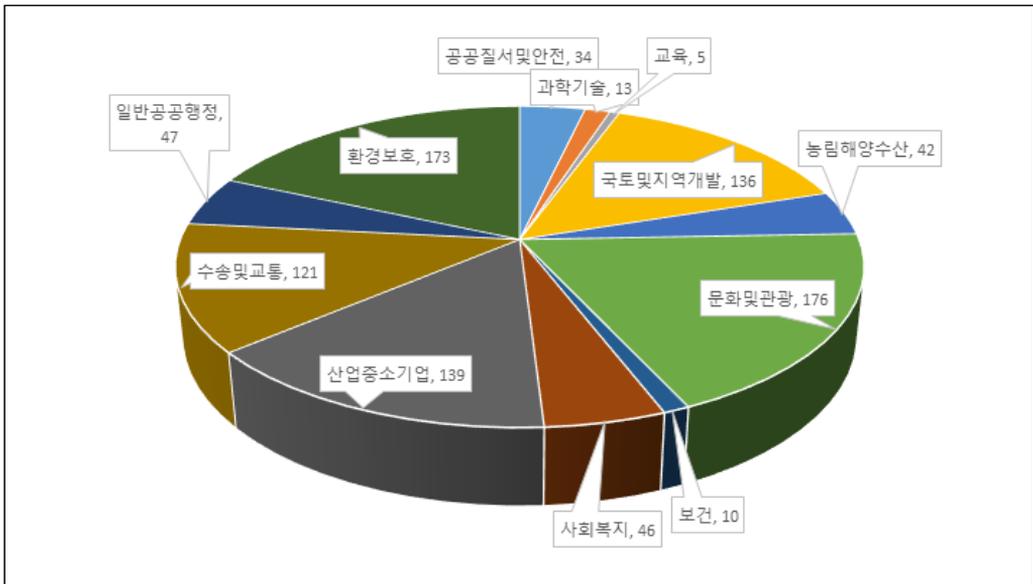
〈표 IV-4〉 분야별 총사업비 분포

구분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합계
공공질서및안전	15	7	7	4	-	1	34 (3.6%)
과학기술	-	3	2	4	2	2	13 (1.4%)
교육	-	1	1	1	2	-	5 (0.5%)
국토및지역개발	7	28	14	13	17	57	136 (14.4%)
농림해양수산	3	21	8	3	3	4	42 (4.5%)
문화및관광	15	66	36	23	15	21	176 (18.7%)
보건	-	2	6	1	-	1	10 (1.1%)
사회복지	-	23	7	6	4	6	46 (4.9%)
산업중소기업	4	19	44	37	20	15	139 (14.8%)
수송및교통	1	24	20	19	16	41	121 (12.8%)
일반공공행정	17	4	9	3	4	10	47 (5.0%)
환경보호	2	64	43	26	22	16	173 (18.4%)
합계	58 (6.2%)	259 (27.5%)	205 (21.8%)	138 (14.6%)	107 (11.4%)	175 (18.6%)	942 (100.0%)

[그림 IV-1] 사업 규모별 대상 사업 건수



[그림 IV-2] 사업 부문별 대상 사업 건수



2. 사후관리단계

- 현재 사후관리단계에 등록된 사업은 전체 사업 중 71건에 불과한 실정임
- 사후관리단계는 준비 및 추진단계와는 달리 사업 기준이 아닌 시설물 기준으로 사업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시설유형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도로및교통, 환경및에너지, 공원및관광, 산업중소기업, 공공청사, 기타시설로 구분되어 있음
 - 71개 사업 중 기타시설이 57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7개, 문화시설 6개와 복지시설 1개임
 - 기타시설 유형 중 하수처리시설, 공공청사, 주민센터 등은 시설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기타시설로 분류해 놓은 상황임
-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15개이며, 나머지는 민간 혹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임

제2절 이력관리 DB 구축 현황

- 기존에 구축된 DB(준비단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의뢰서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오류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함

1. 준비단계 DB(2013~2016년)

- 2013~16년 투심통과사업의 준비단계 DB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가 2017년도에 소급적용하여 4년분을 구축하였으며, e-호조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예산부서의 확인없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심사 의뢰서를 기준으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13~2016년 기 구축 DB를 투자심사 의뢰서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오류 및 수정사항을 검토함
 - e-호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944건의 사업 중, 이력관리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을 제외하여 총 942건으로 정리함
- 투자심사 의뢰서 대비 오류나 수정할 부분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으며,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도 다수임
 - 유형 A : 최종 일정 변경 : 306건(32.5%)
 - 유형 B : 총사업비 변경 : 615건(65.3%)
 - 유형 C : 총사업비는 동일하나, 비용 항목이 변경 : 144건(15.3%)
 - 유형 D : 사업 규모 변경 : 4건(0.4%)
 - 유형 E : 사업 명칭 변경 : 332건(35.2%)
 - 대부분의 사업에서 투자심사 의뢰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제대로 입력한 사업은 100여건으로 10%에 불과한 실정임
 - 참고로 사업 명칭 변경은 띄어쓰기가 틀린 경우도 포함한 수치임

〈표 IV-5〉 2013~2016년 통과사업 준비단계 입력사업 검토 결과

구분	2013~2016년 투자심사 통과사업 준비단계 검토					
	대상 사업	오류 유형				
		파일미제출, 오류(미검토)	추진단계 미입력	사업비오류 (누락, 불일치)	자체평가 및 입력시점 누락	준비단계 내용변경 수정
전체	942	306 (32.5%)	615 (65.3%)	144 (15.3%)	4 (0.4%)	332 (35.2%)
서울	44	10	29	12	0	7
부산	55	0	6	3	0	2
대구	50	10	18	15	0	33
인천	25	10	10	3	3	8
광주	32	14	22	7	0	16
대전	16	12	2	6	0	0
울산	33	0	0	0	0	0
세종	8	7	1	4	0	1
경기	188	133	133	0	0	71
강원	65	23	44	35	0	5
충북	58	1	55	0	0	28
충남	72	68	69	0	0	42
전북	46	1	21	12	0	29
전남	81	15	73	30	0	33
경북	91	1	70	15	0	32
경남	68	0	62	1	1	24
제주	10	1	0	1	0	1

2. 준비단계 DB(2017년)

- 2018년도에 구축한 2017년 투심통과사업의 준비단계 DB 구축업무의 경우,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한 주요정보 입력 요청_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3505(2018.08.23.)』에 의해 시행됨
- 2017년 투자심사에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사업부서는 행정안전부의 시행공문에 의해 배포된 정보입력양식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를 예산부서에 전달하고, 예산부서는 취합·정리하여 행정안전부로 최종 제출하였음
- 공문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가 행정안전부로 최종 제출하는 기한을 2018년 8월 31일까지로 지정하였음

□ 2017년 통과사업 준비단계 입력사업 검토 결과

- 2017년 투자심사에서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이력관리 대상 사업은 총 381건이었으나, 제출 기한 이후 1개월(9.30)까지 제출된 사업은 259건으로 32.2%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 9월 30일까지 제출된 259건의 사업 중에서 투자심사 내용과 상이한 오류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유형 A 의뢰서와 최종일정이 다른 경우 : 126건(26.5%)
 - 유형 B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 151건(31.7%)
 - 유형 C 총사업비는 동일하나 비용항목이 변경된 경우 : 72건(15.1%)
 - 유형 D 사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 106건(22.3%)
 - 유형 E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 21건(4.4%)

〈표 IV-6〉 2017년 통과사업 준비단계 사업정보 검토 결과

구분	2017년 투자심사 통과사업 준비단계 검토							
	대상 사업 (건)	제출 (건)	미제출 (건)	오류 유형				
				최종 일정 변경	총사업비 변경	비용 항목 변경	사업 규모 변경	사업명 변경
전체	381	369	13	126	151	72	106	21
서울	25	25	-	-	-	-	-	-
부산	15	15	-	8	5	7	5	-
대구	9	8	1	7	4	2	1	2
인천	12	12	-	6	6	7	4	6
광주	8	8	-	4	5	3	6	-
대전	19	19	-	10	8	4	4	2
울산	12	12	-	2	4	6	3	-
세종	1	1	-	1	-	-	-	-
경기	86	82	4	32	42	10	20	5
강원	25	21	4	7	8	2	12	-
충북	24	24	-	3	12	8	8	3
충남	18	18	-	10	9	8	7	-
전북	29	27	2	12	21	1	13	1
전남	30	29	1	-	-	-	-	-
경북	36	35	1	10	12	7	15	-
경남	24	24	-	8	6	7	2	1
제주	9	9	-	6	9	-	6	1

3. 추진단계 DB(2013~2016년)

□ 2013~2016년 통과사업 추진단계 입력내용 검토 결과

○ 제출된 사업 중 80개 사업이 검토 및 확인 불가능하며, 여러 입력 오류 발생

- 유형 A 파일 미제출 : 35건(15.8%)
- 유형 B 추진단계 미입력 : 53건(24.0%)
- 유형 C 사업비 오류(누락 또는 불일치) : 44건(19.9%)
- 유형 D 자체평가 및 입력시점 누락 : 30건(13.6%)
- 유형 E 준비단계 변경 : 59건(26.7%)

〈표 IV-7〉 2013~2016년 통과사업 추진단계 사업정보 검토 결과

구분	2013~2016년 투자심사 통과사업 추진단계 검토							
	대상 사업	제출	미제출	오류 유형				
				파일미제출, 오류 (미검토)	추진단계 미입력	사업비오류 (누락, 불일치)	자체평가 및 입력시점 누락	준비단계 내용변경 수정
전체	942	908	34	35	53	44	30	59
서울	44	43	1	1	4	1	11	5
부산	55	55	0	0	14	5	0	1
대구	50	50	0	0	1	2	0	1
인천	25	22	3	3	2	2	1	4
광주	32	30	2	2	3	5	0	0
대전	16	16	0	0	0	1	0	0
울산	33	33	0	0	2	1	5	7
세종	8	8	0	0	0	0	0	3
경기	188	182	6	6	10	0	0	7
강원	65	65	0	0	3	0	0	9
충북	58	58	0	1	0	1	0	0
충남	72	56	16	17	2	11	5	10
전북	46	44	2	1	3	0	0	2
전남	81	78	3	3	0	0	0	0
경북	91	90	1	1	4	9	3	0
경남	68	68	0	0	4	6	5	10
제주	10	10	0	0	1	0	0	0

제3절 소결

1. 사업정보 입력 시 오류 및 검증 과정 부재

- 2017년도에 입력한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투자심사 의뢰서를 기준으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2013년~2016년 데이터를 소급해 2017년에 일괄 입력했지만, 매뉴얼 상 준비단계의 입력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 담당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업정보에 대한 검증 체계가 부재하여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중점관리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당초 의뢰서 기준이 아닌 현재 시점의 기준으로 입력했을 가능성도 존재함
- 각 자치단체에서 e-호조시스템에 단계별 사업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접근 코드가 필요하며, 각 자치단체별로 1개씩만 부여되어 있어 사업별 담당 공무원이 입력하고 있지만, 시스템에 익숙지 않아 자료 입력시 오류가 다수 발생함
 - 담당 공무원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관계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고, 날짜, 사업비 단위 등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사업명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중복 입력하는 경우도 발생함
- 자료 입력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e-호조시스템에서 이러한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 및 장치가 전무한 실정임
 - 『2017 투자사업 이력관리 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에서도 2016년 시범 사업을 통해 처음 도입된 e-호조시스템의 입력오류 및 검증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DB 구축을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향후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입력되는 사업정보 DB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차 및 2차평가의 기준이 되는 준비단계의 사업내용은 투자심사에 계획된 사업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LIMAC에서 오류가 발견된 내용에 대하여 모두 수정함

2. 변경 및 중단 사업의 처리 방안 부재

-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 간 내용 변경 및 중단된 경우에 대한 관리기준이 부재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된 사업내용으로 추진을 하거나, 중단하고 있음
- 공식적인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 어떠한 절차도 없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다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관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안임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의사결정이라고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를 구성하는 일원이며, 그 의사결정이 그때그때의 논리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제 V 장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개선 방안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개선 방안

- 앞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와 관련된 법령, 매뉴얼, 현행 e-호조시스템을 통한 사업정보를 DB로 구축하기 위한 입력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기존 심사규칙 제9조의2(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등) 1항(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와 2항(투자사업 이력관리)을 별도의 조로 분리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력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수행 체계를 구체화한 내용을 반영한 매뉴얼 작성 필요
 - 이때, 매뉴얼 내에서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격상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담당자와 원활한 업무 수행, 주요 사업내용 수집 및 시스템 접근 권한 확보 등을 위해 LIMAC을 공식적인 ‘이력관리 수행기관’으로 지정 필요
- 현행 e-호조시스템을 통한 업무 수행 체계에 대한 문제점 해결 필요
 - LIMAC이 지방자치단체가 입력한 주요 사업내용으로 구축된 DB의 오류를 검토하거나, 중점관리사업 선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 또한, 기존에 설정된 DB구축 대상인 주요 사업내용의 항목 개선 및 입력 기준 마련 등이 필요
- 사후관리단계의 사업정보 DB 구축 및 평가 제외 필요
 - 사후관리단계의 사업정보 수집의 한계로 DB구축 업무수행 불가하며, 평가기준 또한 마련되지 않음
 - 또한, 투자심사단계 계획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의 실효성이 낮음
- 기타 사항으로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이력관리 성과물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제언함

〈표 V-1〉 주요 쟁점별 개선 방안 도출

구분	검토 내용	주요 쟁점	개선 방안				
1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규칙 제9조의2(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등) 1항(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와 2항(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행체계 구체화 방안 필요 심사규칙과 매뉴얼 간 상호연계성 부족에 따른 전면 재수정 필요 현재 설정된 용어의 직관적 이해도 낮음에 따른 재정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항(투자사업 이력관리)을 별도의 조로 분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기존</th> <th>변경</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9조의2(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9조의2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제9조의3(투자사업 이력관리)</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수행체계를 구체화한 내용을 반영한 매뉴얼 개정 ※ 현재 '절'에 위치한 내용을 '장' 수준으로 격상 	기존	변경	제9조의2(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등)	제9조의2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제9조의3(투자사업 이력관리)
		기존	변경				
		제9조의2(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등)	제9조의2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제9조의3(투자사업 이력관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실태조사, 점검 등과의 중복성 문제, 투자심사단계 계획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에 관한 우려로 이력관리에서 사후관리단계의 평가 업무 제외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단계의 평가 업무 제외 필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LIMAC의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자치단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담당자와 원활한 업무 수행, 사업정보 수집 및 접근 권한 확보 등을 위해 공식적인 '이력관리 수행 기관' 지정 필요 					
4	현행 이력관리 업무 수행체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상 추진단계의 사업정보 입력시기 및 기준시점 미제시로 업무 수행 시 혼란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단계 사업정보는 결산서 기준으로 하며, 입력양식 및 결산서(6월)를 LIMAC에 제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관리 업무 특성 상, 사업정보 DB 구축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나, 매뉴얼 상으로 입력 주체만 간단히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관리 체계(주체 포함) 미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준비단계 사업정보 및 결산서 기준 추진단계 사업정보 DB를 구축하도록 행안부가 LIMAC에 업무수행 요청 LIMAC이 오류 검토 및 자치단체에 확인하여 최종 DB를 구축하고, 추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호조시스템에 DB 이전 ※ 개별 사업별로 매년 연속적으로 사업정보 DB가 갱신되고, 이를 토대로 중점관리사업 선정, 자치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e-호조시스템을 통한 사업정보 입력 및 관리업무 수행체계의 한계점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업정보 관리방안 도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사업별로 매년 연속적으로 사업정보 DB가 갱신되고, 이를 토대로 중점관리사업 선정, 자치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매년 연속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 항목 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설정된 사업정보를 전면 재검토하여 항목 추가, 세분화, 간소화, 삭제, 유지 등으로 구분하여 개편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정보 확보 및 평가를 위한 DB 전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관리대상 사업수, 차년도와의 정보 연결성 확보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시스템)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C이 사업정보 DB 구축, 중점관리사업 선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사업 DB관리 시스템(가칭)' 개발 					
9	이력관리 대상사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DB 구축 시, 사업정보의 원결성 제고를 위한 오류 확인 및 검증 체계 마련 필요 					

구분	검토 내용	주요 쟁점	개선 방안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 간 내용 변경 및 중단된 경우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사업 추진 중 변경된 사업계획(2단계심사 포함)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승인 절차 - 사업 추진 중 중단 사업(재심사 대상 포함)에 대한 취소 승인 절차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정보 수집의 한계로 사후관리단계의 사업정보 DB구축 업무수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단계의 사업정보 DB구축 업무 제외
13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심사 면제 사업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심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필요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중앙심사 위주의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이력관리 제도는 구축된 전체 사업정보 DB를 행안부만 확인 가능하며, DB활용을 평가에만 한정 ※ 추후 다양한 정보를 분석·가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표출하는 방안(시스템)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정보 DB를 가공·분석하여 자치단체의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정부부처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 필요 ※ 시스템 개발시 반영

제1절 사업정보 DB 구축체계 개선

1. 사업정보 입력방식 및 항목 개정

가. 입력방식 및 항목 개정 배경

- 앞서 분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호조시스템이 아닌 대안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 또는 입력한 주요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가 e-호조시스템을 통해 사업내용을 입력하는 체계 하에서는 예산부서 및 광역 시도 예산부서, 행정안전부(LIMAC)가 접근할 권한이 없는 한 이력관리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e-호조시스템 역시 조금씩 보완해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양식이 수정되더라도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항목이 수정되지 않아 해당 데이터로 업무를 수행 시 동일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DB에 대해서도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당초에는 사업담당자가 사업기간, 투자심사 결과, 심사유형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e-호조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7년 말 e-호조시스템 개선을 통해 드롭박스 형태로 정해진 항목을 선택하게 변경됨
 - 하지만, 2017년 말 이전에 입력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작업이 필요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활용해 DB 활용 목적에 적합한 형태의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e-호조시스템이 아닌 방식으로 DB를 관리하게 되면 DB 확보를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행정안전부 → KLID → 행정안전부 → LIMAC)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DB 구축기간이 단축됨
 - 또한, 자치단체에서 입력한 결과의 오류 검토 및 즉각적인 수정으로 DB의 신뢰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자치단체에서 입력한 결과를 LIMAC에서 투자심사 의뢰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오류사항을 바로 DB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DB의 신뢰성이 향상됨
 - 사업추진주체인 자치단체에서는 준비단계 자료를 입력할 때 중점사업에 선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추진단계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따라서 개별 투자사업 사업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엑셀 양식을 작성하고 DB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e-호조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나. DB 항목 개선 및 입력 양식 개발

이력관리를 위한 사업정보 DB 항목은 현행 심사규칙 및 매뉴얼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기존 e-호조시스템의 입력 항목을 비교·검토하여 개선하였으며, 항목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현행 심사규칙 및 매뉴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분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
- 투자심사 통과 이후 과정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
- 매뉴얼 상, 자체평가 및 중점관리사업 선정 가능하도록 구성
- ‘사업준비단계-추진단계’, ‘사업준비단계-준공단계’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구성
- 기술적으로 DB 설계 및 구축 가능하도록 구성

투자사업 이력관리 DB 작성을 위해 사업별 입력 양식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담당자들이 준비단계(투자심사 정보)와 매년 추진단계를 단순 비교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함

- 입력 양식은 입력자가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동일한 열에 배치하여 직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토록 함
- 준비단계의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개요, 사업량 및 규모정보, 투자심사정보, 사전

절차이행정보, 일정정보,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분양수입 정보,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추진단계는 사업량 및 규모정보, 투자심사 조건이행여부, 일정정보, 총사업비, 자체평가정보, 재원조달계획으로 구성됨

[그림 V-1] 이력관리 DB 작성을 위한 엑셀파일 전체 화면

추가		세분화, 간소화																																																																																																																																																																																																																																											
<p>투자심사정보</p> <p>심사시기: 2018년 04월 01일</p> <p>심사용역: 동양외역</p> <p>심사결과: 조건부</p> <p>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양외역 공공주택 사업부지 내 시설 및 인력 운용방안 미확립 2. 3. 4. <p>재원조달계획(간접공사)</p> <p>심사결과: -</p> <p>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p>사업량 규모정보</p> <p>사업량: 44,171 m²</p> <p>주요 사업내용: 단독주택(복합/수영장 등)</p> <p>(계약서상만 입력)</p> <p>면적: 4,602 m² 층수: 112 층(지하/지상)</p> <p>연면적: -</p> <p>도로 길이: km 폭별: 차로(왕복)</p> <p>주책: 세대수 세대</p> <p>환경시설: 시설용량 m²(총/일)</p> <p>기타: (유형) (단위)</p> <p>사업위치: (현주소) 읍면동</p>	<p>사업량 규모정보(변동사항만)</p> <p>사업량: 44,171 m²</p> <p>주요 사업내용: 단독주택(복합/수영장 등)</p> <p>(계약서상만 입력)</p> <p>면적: 4,602 m² 층수: 112 층(지하/지상)</p> <p>연면적: -</p> <p>도로 길이: km 폭별: 차로(왕복)</p> <p>주책: 세대수 세대</p> <p>환경시설: 시설용량 m²(총/일)</p> <p>기타: (유형) (단위)</p> <p>사업위치: (현주소) 읍면동</p>	<p>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p> <p>일도: 투자심사 조건</p> <p>이행: 이행여부 세부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양외역 공공주택 사업부지 내 시설 및 인력 운용방안 미확립 2. 3. 4. 2-1. 2-2. 2-3. 																																																																																																																																																																																																																																										
<p>사업기간</p> <p>시도: 2019년 04월 01일</p> <p>시군구: 2018년 06월 31일</p> <p>읍면동: -</p>	<p>일정(연월)정보</p> <p>기본계획: 2016년 07월 완료</p> <p>실시계획: 2017년 06월 미시행</p> <p>보상: -</p> <p>공사착공: 2017년 07월 미시행</p> <p>공사준공: 2018년 06월 미시행</p>	<p>일정(실제 예정)정보</p> <p>기본계획: 2006년 07월 완료</p> <p>실시계획: 2017년 06월 완료</p> <p>보상: -</p> <p>공사착공: 2018년 04월 완료</p> <p>공사준공: 2019년 10월 미시행</p>	<p>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p> <p>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391</p> <p>운영비 (단위: 백만원/년): 391</p> <p>구분: 금액</p> <table border="1"> <tr><td>공사비</td><td>12,700</td></tr> <tr><td>보상비</td><td>1,100</td></tr> <tr><td>운영비</td><td>1,600</td></tr> <tr><td>합계</td><td>15,400</td></tr> </table> <p>운영수입 (단위: 백만원/년): 391</p> <table border="1"> <tr><td>사용료</td><td>203</td></tr> <tr><td>임대료</td><td>156</td></tr> <tr><td>합계</td><td>359</td></tr> </table>	공사비	12,700	보상비	1,100	운영비	1,600	합계	15,400	사용료	203	임대료	156	합계	359	<p>총사업비 및 자체평가 정보</p> <p>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18,600</p> <p>평가항목</p> <table border="1"> <tr><th>항목</th><th>여부</th><th>기대사항</th></tr> <tr><td>1. 최근 사업비 투입률 6개월 이상 예산 투입 없음</td><td>X</td><td></td></tr> <tr><td>2.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td><td>O</td><td>조건부, 불가상승</td></tr> <tr><td>3.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10% 이상 변동</td><td>O</td><td></td></tr> <tr><td>4.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10% 이상 변동</td><td>O</td><td></td></tr> <tr><td>5. 재무부담률(매입차량/신용보증 등 있음)</td><td>X</td><td></td></tr> <tr><td>6.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있음</td><td>O</td><td>현황유지, 적정유지</td></tr> <tr><td>7.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td><td>X</td><td></td></tr> <tr><td>8.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있음</td><td>X</td><td></td></tr> <tr><td>9.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td><td>O</td><td></td></tr> <tr><td>10.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td><td>O</td><td>조건이행됨</td></tr> <tr><td>11.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td><td>X</td><td></td></tr> </table>	항목	여부	기대사항	1. 최근 사업비 투입률 6개월 이상 예산 투입 없음	X		2.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O	조건부, 불가상승	3.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10% 이상 변동	O		4.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10% 이상 변동	O		5. 재무부담률(매입차량/신용보증 등 있음)	X		6.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있음	O	현황유지, 적정유지	7.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	X		8.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있음	X		9.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	O		10.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	O	조건이행됨	11.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	X																																																																																																																																																																																								
공사비	12,700																																																																																																																																																																																																																																												
보상비	1,100																																																																																																																																																																																																																																												
운영비	1,600																																																																																																																																																																																																																																												
합계	15,400																																																																																																																																																																																																																																												
사용료	203																																																																																																																																																																																																																																												
임대료	156																																																																																																																																																																																																																																												
합계	359																																																																																																																																																																																																																																												
항목	여부	기대사항																																																																																																																																																																																																																																											
1. 최근 사업비 투입률 6개월 이상 예산 투입 없음	X																																																																																																																																																																																																																																												
2.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O	조건부, 불가상승																																																																																																																																																																																																																																											
3.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10% 이상 변동	O																																																																																																																																																																																																																																												
4.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10% 이상 변동	O																																																																																																																																																																																																																																												
5. 재무부담률(매입차량/신용보증 등 있음)	X																																																																																																																																																																																																																																												
6.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있음	O	현황유지, 적정유지																																																																																																																																																																																																																																											
7.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	X																																																																																																																																																																																																																																												
8.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있음	X																																																																																																																																																																																																																																												
9.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	O																																																																																																																																																																																																																																												
10.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	O	조건이행됨																																																																																																																																																																																																																																											
11. 최종 투자심사요청서 대비 사업비 변동 없음	X																																																																																																																																																																																																																																												
<p>사업추진사항</p> <p>타당성조사: (의결사항) 안건시 집행가능</p> <p>조사기간: -</p> <p>결론: -</p> <p>시C: -</p> <p>P/I: -</p> <p>기타: -</p> <p>의견: -</p>	<p>분양가 정보</p> <p>분양가: -</p> <p>분양면적: -</p> <p>분양시점: -</p> <p>분양용도: -</p> <p>연도: 0 1 2 3 4 5 6</p>	<p>재원조달계획</p> <p>연차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계</th><th>기초차</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r> <tr><td>총회계예산</td><td>2,800</td><td>280</td><td>-</td><td>-</td><td>2,520</td><td>-</td></tr> <tr><td>국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방세</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도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방세</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군구비</td><td>6,800</td><td>1,300</td><td>-</td><td>-</td><td>5,500</td><td>-</td></tr> <tr><td>지방세</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민간차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6,000</td><td>-</td><td>-</td><td>-</td><td>6,000</td><td>-</td></tr> <tr><td>예산외</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15,600</td><td>1,500</td><td>-</td><td>-</td><td>14,100</td><td>-</td></tr> </table>	구분	계	기초차	2016	2017	2018	2019~	총회계예산	2,800	280	-	-	2,520	-	국비	-	-	-	-	-	-	기타	-	-	-	-	-	-	지방세	-	-	-	-	-	-	시도비	-	-	-	-	-	-	지방세	-	-	-	-	-	-	시군구비	6,800	1,300	-	-	5,500	-	지방세	-	-	-	-	-	-	민간차분	-	-	-	-	-	-	기타	6,000	-	-	-	6,000	-	예산외	-	-	-	-	-	-	합계	15,600	1,500	-	-	14,100	-	<p>재원조달계획</p> <p>연차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계</th><th>기초차</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총회계예산</td><td>2,800</td><td>280</td><td>-</td><td>-</td><td>900</td><td>1,700</td><td>-</td><td>-</td><td>-</td><td>-</td></tr> <tr><td>국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방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도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방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군구비</td><td>8,000</td><td>1,300</td><td>-</td><td>-</td><td>30</td><td>2,000</td><td>6,400</td><td>-</td><td>-</td><td>-</td></tr> <tr><td>지방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민간차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6,000</td><td>-</td><td>-</td><td>-</td><td>-</td><td>6,000</td><td>-</td><td>-</td><td>-</td><td>-</td></tr> <tr><td>예산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18,800</td><td>1,500</td><td>-</td><td>-</td><td>900</td><td>1,700</td><td>8,000</td><td>6,400</td><td>-</td><td>-</td></tr> </table>	구분	계	기초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회계예산	2,800	280	-	-	900	1,700	-	-	-	-	국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시군구비	8,000	1,300	-	-	30	2,000	6,400	-	-	-	지방세	-	-	-	-	-	-	-	-	-	-	민간차분	-	-	-	-	-	-	-	-	-	-	기타	6,000	-	-	-	-	6,000	-	-	-	-	예산외	-	-	-	-	-	-	-	-	-	-	합계	18,800	1,500	-	-	900	1,700	8,000	6,400	-	-
구분	계	기초차	2016	2017	2018	2019~																																																																																																																																																																																																																																							
총회계예산	2,800	280	-	-	2,520	-																																																																																																																																																																																																																																							
국비	-	-	-	-	-	-																																																																																																																																																																																																																																							
기타	-	-	-	-	-	-																																																																																																																																																																																																																																							
지방세	-	-	-	-	-	-																																																																																																																																																																																																																																							
시도비	-	-	-	-	-	-																																																																																																																																																																																																																																							
지방세	-	-	-	-	-	-																																																																																																																																																																																																																																							
시군구비	6,800	1,300	-	-	5,500	-																																																																																																																																																																																																																																							
지방세	-	-	-	-	-	-																																																																																																																																																																																																																																							
민간차분	-	-	-	-	-	-																																																																																																																																																																																																																																							
기타	6,000	-	-	-	6,000	-																																																																																																																																																																																																																																							
예산외	-	-	-	-	-	-																																																																																																																																																																																																																																							
합계	15,600	1,500	-	-	14,100	-																																																																																																																																																																																																																																							
구분	계	기초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회계예산	2,800	280	-	-	900	1,700	-	-	-	-																																																																																																																																																																																																																																			
국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시도비	-	-	-	-	-	-	-	-	-	-																																																																																																																																																																																																																																			
지방세	-	-	-	-	-	-	-	-	-	-																																																																																																																																																																																																																																			
시군구비	8,000	1,300	-	-	30	2,000	6,400	-	-	-																																																																																																																																																																																																																																			
지방세	-	-	-	-	-	-	-	-	-	-																																																																																																																																																																																																																																			
민간차분	-	-	-	-	-	-	-	-	-	-																																																																																																																																																																																																																																			
기타	6,000	-	-	-	-	6,000	-	-	-	-																																																																																																																																																																																																																																			
예산외	-	-	-	-	-	-	-	-	-	-																																																																																																																																																																																																																																			
합계	18,800	1,500	-	-	900	1,700	8,000	6,400	-	-																																																																																																																																																																																																																																			
<p>지방세 조건</p> <p>기분할: -</p> <p>신규발행: -</p>	<p>지방세 조건</p> <p>기분할: -</p> <p>신규발행: -</p>	<p>지방세 조건</p> <p>기분할: -</p> <p>신규발행: -</p>	<p>지방세 조건</p> <p>기분할: -</p> <p>신규발행: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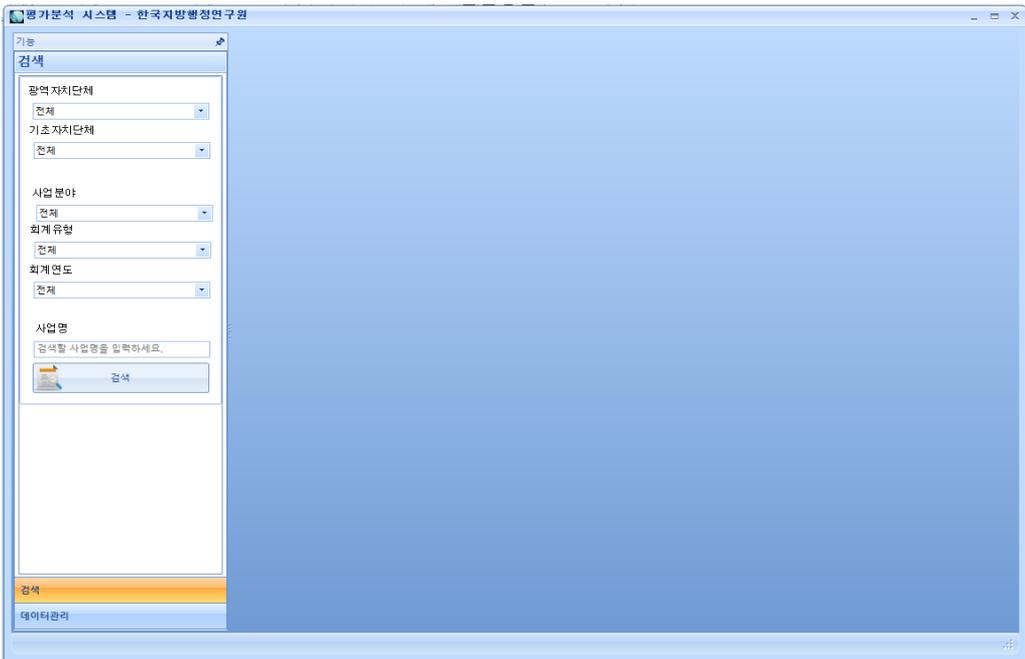
□ e-호조시스템 상 사업정보 DB 항목과 본 연구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DB 항목이 서로 상이하며 개별 단계별로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추가함

- e-호조시스템 상에는 투자사업등록단계와 준비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준비단계를 기준으로 추진단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등록단계와 준비단계에서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함
- e-호조시스템 상 사전절차이행결과로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 전시시설건립의 타당성, 국제행사심의위원회심사, 투자심사, 기타 등으로 사전절차별 시기, 이행기관, 결과, 의견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항목은 삭제함
 - 이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자심사가 통과될 가능성도 낮을뿐만 아니라, 만약 해당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경우에도 조건 이행여부만 관리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정보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 투자심사 정보는 사전절차이행결과로 심사시기, 절차이행기관, 결과, 의견, 심사 유형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행과 동일하게 정보를 관리할 경우 해당 사업의 조건이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조건이행여부를 판단하고 2단계 심사정보도 기입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엑셀화면을 보면 준비단계에서 투자심사정보를 2단계심사를 포함하여 기재토록 되어 있고, 조건별로 별도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추진단계에서 각 조건별로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행여부 기재란을 추가함
- 사업량은 공통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지면적과 개별사업의 유형(도로, 주택, 환경, 주차,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 향후 사업량이 변경될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반영함
- 일정정보는 공사단계를 부지조성(착공), 상부건축물건립, 설비도입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투자심사 단계에서 공사 착공, 준공으로 구분하고 있어 항목을 간소화함
- 재원조달계획에서 국비는 지원부처별로 세분화하였는데, 투자사업의 재원조달 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 지원으로 위해 추가함

2.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 개발

- 관리 대상 사업수, 개별 사업별 정보의 수,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리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주요 사업내용을 하나의 데이터로 취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에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가칭)’을 개발함
-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의 초기화면은 다음과 같고 등록된 투자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조회하고(검색) 투자사업 엑셀파일을 등록(데이터관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
 - 추진 자치단체(광역/기초)별로 사업분야, 회계유형, 회계연도 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사업명을 직접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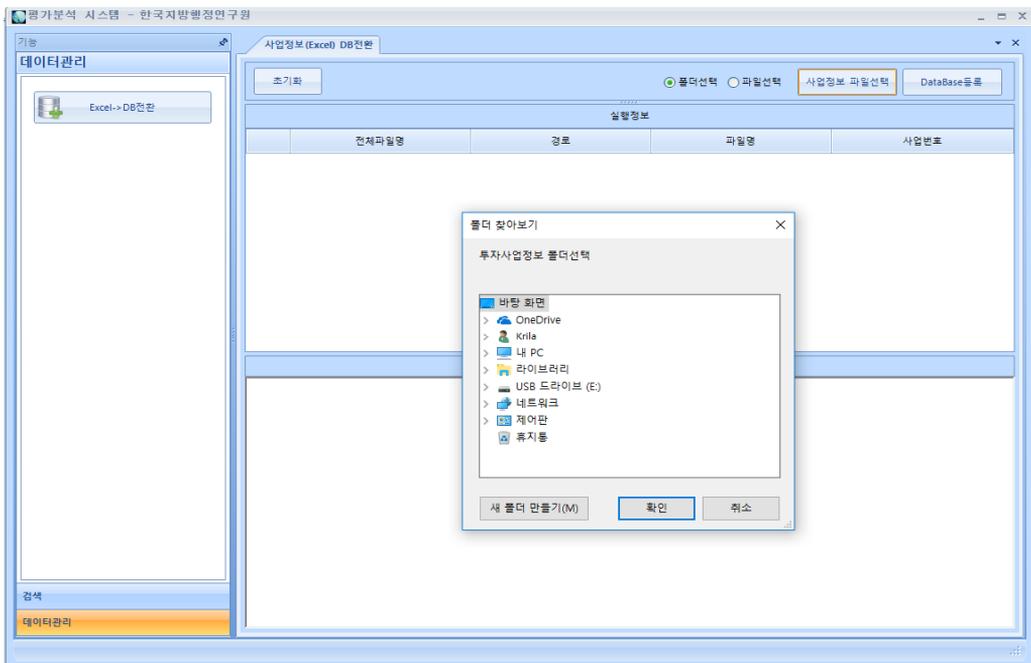
[그림 V-2]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 초기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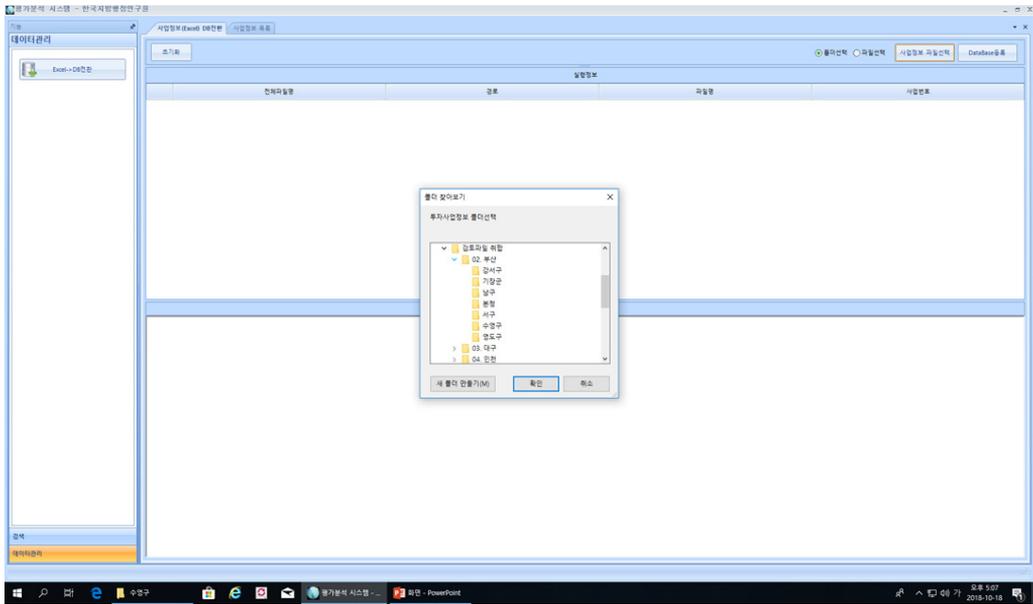
- 각 투자사업 엑셀파일을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 상 등록하는 방법은 우측화면 하단에 데이터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정보(excel 양식) DB 전환이라는 창이 뜨게 되고 사업정보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사업정보를 DB에 입력하게 됨

- 등록하는 방식은 전체 폴더를 선택하는 방식과 파일을 클릭하는 방식이 있으며 2 가지 중 선택해서 등록 가능함
- 주요 사업내용을 등록하고 검색기능을 통해 투자사업 정보를 조회하면 투자사업 별로 한 개 행으로 이력관리를 위한 사업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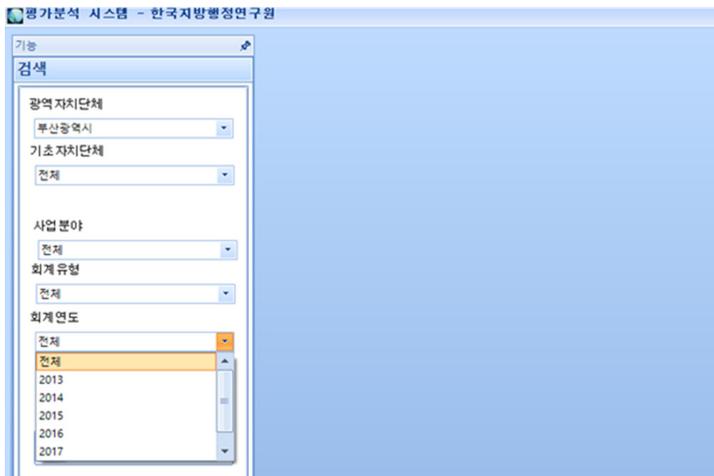
[그림 V-3]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 파일등록 화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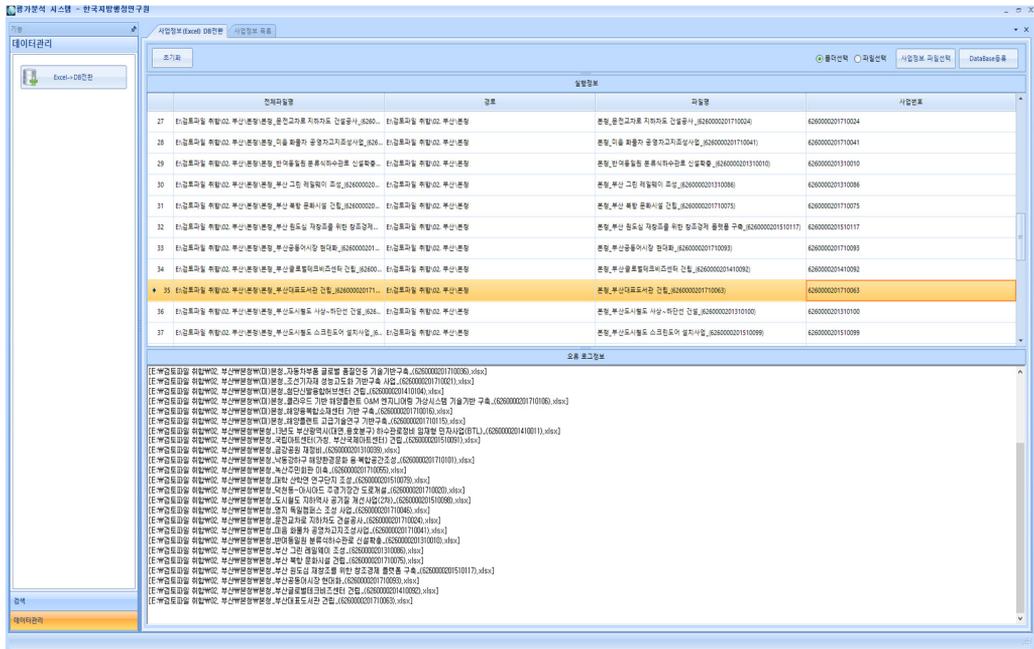
[그림 V-4]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 파일등록 화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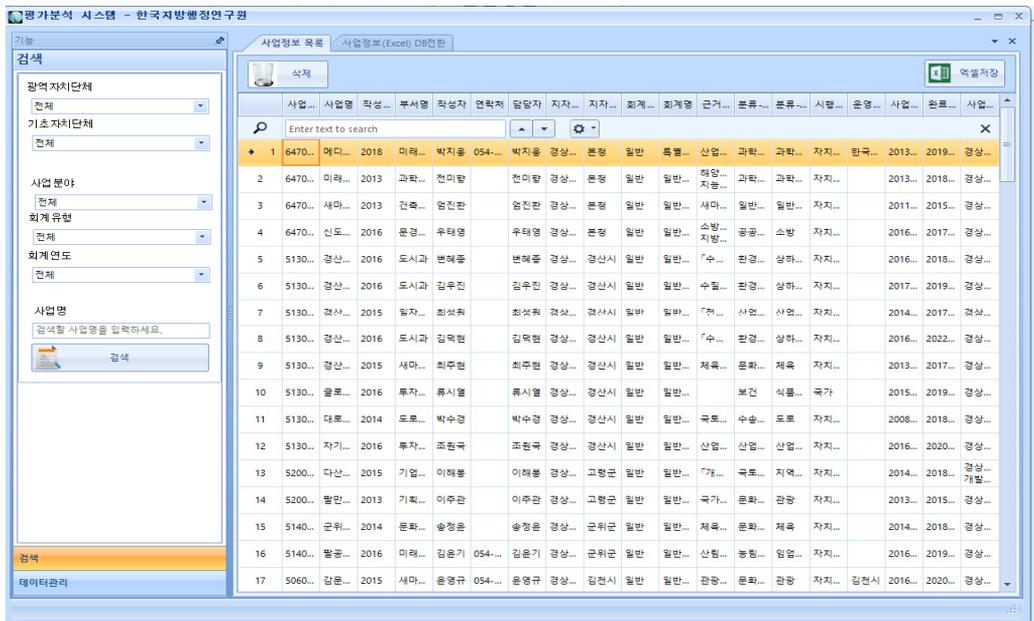
[그림 V-5] 검색 기능 선택 화면



[그림 V-6] 선택된 사업의 DB구축 진행 화면(개별 엑셀양식 정보 ⇒ 시스템 DB 구축)



[그림 V-7]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 파일등록 후 조회 화면



□ 사업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저장이 되는 데 심사시기가 해당연도와 차수로 구분되고 심사유형 및 결과도 정형화된 유형으로 정리되어 별도의 전처리 작업이 불필요하게 됨

○ 따라서 기존 방식에 비해 자치단체가 입력한 DB 확인 및 오류 수정, 중점관리사업 선정을 위한 분석,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부서 추진 현황 분석,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사업 현황 분석 등을 위한 전처리 작업에 있어서 업무효율성이 대폭 향상됨

[그림 V-8] 이력관리 DB를 엑셀 파일로 저장한 화면

투자심사									
1단계심사	1단계심사	1단계심사-결과	1단계-조건1	1단계-조건2	1단계-조건3	1단계-조건4	2단계심사-년	2단계심사-차	2단계심사-유
2014	02	시군구자체	조건부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시·구비 추경센터 완공 후 현상개선사업은 대각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구체적인 수익시설 유지방안 마련					
2013	01	시군구자체	조건부	안전행정부의 청사건립 비유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시기를조정, 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속 공간 및 공용면적등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2015	04	중앙의뢰	적정						
2015	04	중앙의뢰	조건부	0보금자리주택 입주 후 민원최소50 자체지원 확보대책 마련하여 추진					
2016	04	중앙의뢰	조건부	동 시설 조성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유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수익창출 방안 마련					
2016	02	중앙의뢰	조건부	동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센터 건립 후 운영시 구체적인 수익금 처리 및 손실금 확보방안 마련					
2014	01	중앙의뢰	조건부	편의약 박물관 등 한방 산업진흥센터 조성규모는 축소하되, 공영주차장은 향후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확대					
2014	03	시도자체	조건부						
2014	01	중앙의뢰	조건부(2단계)	시설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후 지원관련 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 이행			2015	02	중앙의뢰
2016	04	중앙의뢰	조건부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이용료 등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 및 시설효율 극대화 방안 마련					
2016	04	중앙의뢰	조건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2016	04	중앙의뢰	조건부	중사 신속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2015	01	중앙의뢰	적정						
2015	03	중앙의뢰	조건부(2단계)	연차별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시비 관광버스 주차장, 곤돌라 등 주요 시군구라 설치사업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방안을 마련			2016	04	중앙의뢰
2013	01	중앙의뢰	적정						
2015	02	시도자체	조건부						
2014	01	중앙의뢰	적정	계획대로 사업 추진					
2016	03	중앙의뢰	조건부(2단계)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재산 자치단체 재원부담 대가로 운영 참가가 지방 재정 부담이 없도록 조			2016	04	중앙
2015	04	중앙의뢰	조건부	동 센터의 관광객 증대를 위한 구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실제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 이행					
2013	02	중앙의뢰	조건부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 이행			2014	02	
2016	04	중앙의뢰	조건부(2단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문화재청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추가사업비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 이행		중앙의뢰
2014	03	중앙의뢰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2015	04	중앙의뢰	조건부	지방비조금으로 조성된 시설, 장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선정방안을 마련					
2014	03	중앙의뢰	적정						
2015	01	중앙의뢰	조건부	연차별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시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면 자체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 편성					
2013	01	중앙의뢰	조건부	운영비는 시비를 제외한 재원에서 부지 등 부동산은 부산광역시 재산으로 유지하면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					
2015	02	중앙의뢰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산광역시 재산으로 유지하면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				
2015	04	중앙의뢰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연차별 국비지원 계획 확정 후 시비 캠퍼스 입주가 미확정된 대학 및 R&D센터 등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유지 마케팅 방안 마련 필요				
2016	04	중앙의뢰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6	04	중앙의뢰	조건부	동 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및 운영시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2013	01	중앙의뢰	적정						
2013	03	중앙의뢰	조건부	동 시설 조성관련 개발구역 지정 등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4	01	중앙의뢰	조건부(2단계)	시 재정여건 및 낮은 경제성장률로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 이행			2017	02	중앙의뢰

제2절 이력관리 업무체계 정비

- 현재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해 e-호조시스템에 투자심사 통과사업의 준비단계 사업정보를 최초 등록(준비단계 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투자심사 통과 이후 1개월 이내에 e-호조시스템에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등록 기준을 변경하거나, LIMAC에서 우선 준비단계 DB를 구축하고, 이후에 e-호조시스템에 이전하여 사업을 등록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이력관리는 하나의 사업에 대한 준비단계부터 추진과정 상의 주요 사업내용을 (매년)연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DB 구축 및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매뉴얼 상으로나 실제 업무상으로 입력 업무만 제시·강조되어 있어 제대로 된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입력된 DB의 확인 및 검토, 정확한 값으로의 수정, DB를 통한 분석, DB 유지관리, 차년도 이력관리 준비 등 각각의 업무도 세부적인 수행체계(업무 수행 및 담당자, 업무 시기 등)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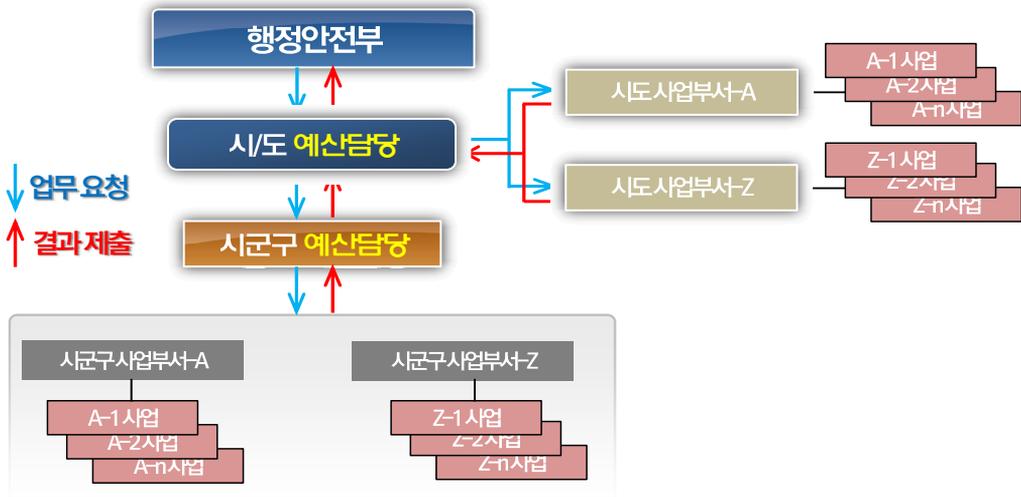
1. 이력관리 업무수행 체계 개선

가. 업무수행 체계 명확화

- DB구축을 포함한 모든 이력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후 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쳐 상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뉴얼에 아래의 그림을 제시하여 모든 행정적 절차 수행 시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로는 명확한 업무수행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상의 한계로 사업부서에서 e-호조시스템에 바로 입력하고 있음

- 또한, 중점관리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가 소명자료와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나, 예산부서 및 상위 기관의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현실임
- 1차평가(자체점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군구 예산부서 또는 시도 예산부서가 추가 되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V-9] 주체별 이력관리 업무수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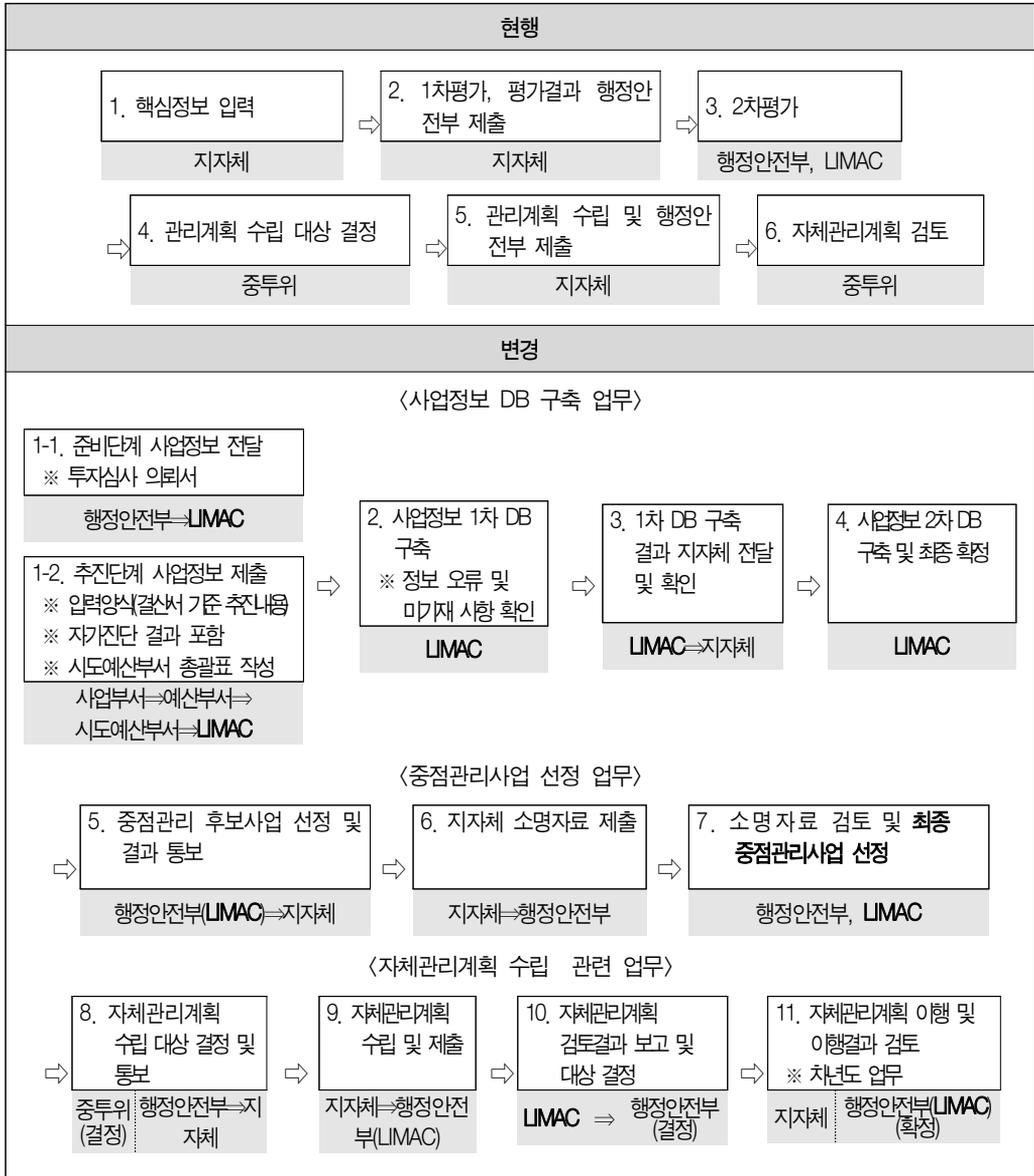


나. 이력관리 업무수행 체계 개선

- 업무 추진절차 상으로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업무가 존재하며, 업무별로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고 판단됨
- 사업정보 DB구축 수행 체계 개선(안) 반영, 단계별 업무이행 주체 재설정, 실제 이력관리 업무 반영 필요
- 준비단계 사업정보와 추진단계 사업정보의 DB 구축을 별도로 제시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각각 단계별 사업내용 기준을 명확히 설명
- 현행 ‘자체관리계획 검토’ 결과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대상 결정’ 결과를 LIMAC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가 확정하는 안을 제안함

○ 차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및 이행결과 검토 업무 반영

[그림 V-10]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추진절차 및 범위 변경



○ 현재 설정된 용어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 낮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안)을 제 시함

〈표 V-2〉 이력관리 업무 관련 용어 변경(안)

기존	개선(안)	용어 설명
핵심정보	사업정보 (주요 사업내용)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계획 정보와 집행, 완료 단계의 정보를 총칭
사업준비단계	계획단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후 확정된 사업의 계획
사업추진단계	집행단계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 예산 집행 단계
	완료단계	예산 집행 완료 단계
사후관리단계	삭제	
1차평가(자체평가)	자가진단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확인
2차평가	종합검토	이력관리 DB와 자가진단 결과를 종합검토하는 단계로 사업의 진행상황, 중점관리, 계획정보 변동사항 등을 검토
중점관리사업	좌동	지속적 계획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
자체관리계획 수립	좌동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 문제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 계획 마련

2. 사업정보 DB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가. 준비단계의 사업정보 DB 구축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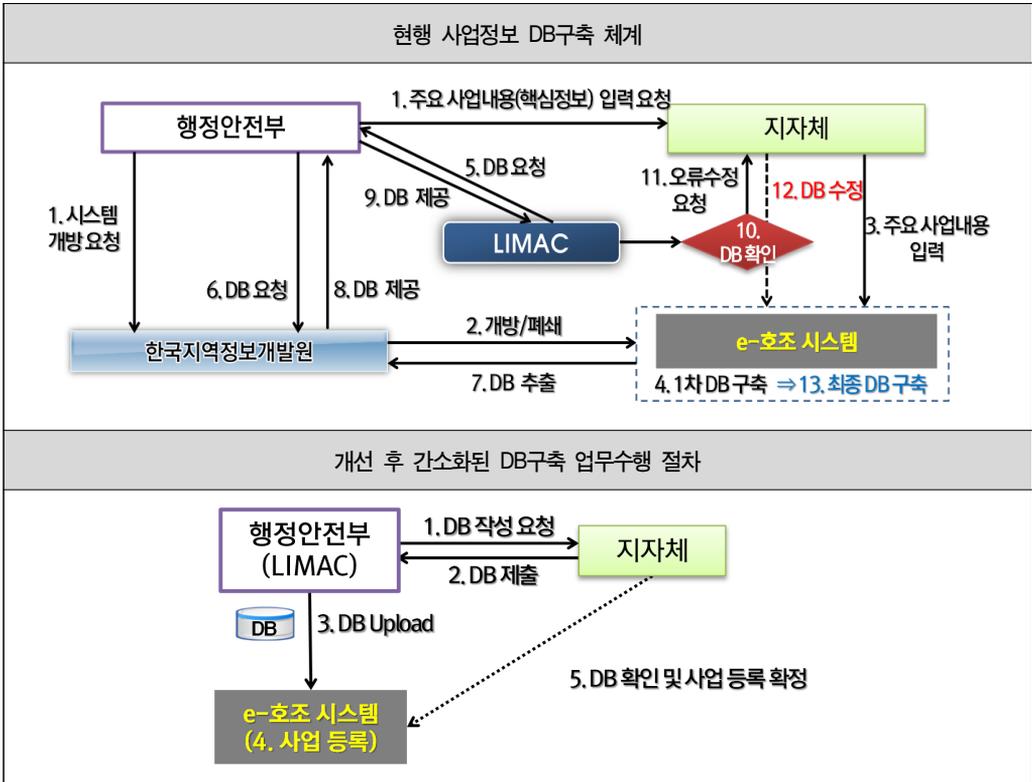
- LIMAC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한 투자심사 의뢰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령하며, 이를 기반으로 LIMAC이 주요 사업내용 확인 및 DB구축업무 수행
- 입력 대상은 당해 연도 투자심사 통과 사업으로 하며, DB구축은 심사가 완료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승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력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함
 - 심사규칙에 의거 2018년부터 중앙투자심사는 연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수시심사가 개최될 수 있음
 - 만약, 의뢰서 상에 불명확하거나 부실한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LIMAC이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심사 의뢰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일정, 사업내용 등 사업정보를 LIMAC이 개발한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가칭)’에 입력 및 구축

- 1차적으로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에 구축된 DB를 다시 관련 사업부서와 예산 부서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며, DB구축에 대한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함
 - 투자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LIMAC이 직접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을 통해 DB 구축 → 지방자치단체별 DB구축 결과 통보 → 자치단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내용 확인 및 사업등록 확정
- LIMAC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해 e-호조시스템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한 자료를 작성하더라도 e-호조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
- 또한 각 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 입력한 정보에 대한 확인 및 평가(중점관리사업 선정, 자체관리계획 검토 등) 분석 주체인 행정안전부와 LIMAC은 e-호조시스템에 접근하여 사업정보 DB를 추출할 권한이 없었음
- 차년도에 사업 점검을 위해 DB가 다시 활용되어야 하나, 관리 주체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연결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함
- 이력관리를 위한 사업정보 DB 구축 절차 개선을 통해 기존의 문제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V-11] 준비단계 사업정보 DB 구축 절차



[그림 V-12] 개선(안) 반영 시 간소화된 업무수행 절차



나. 추진단계의 사업정보 DB 구축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결산서 및 집행단계 주요 사업내용 입력결과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집행단계의 주요 사업내용을 DB로 구축하는 업무를 LIMAC에 수행하는 것을 요청
 - 이를 기반으로 LIMAC이 입력주체가 되어 당해 연도에 제출된 결산서 및 집행단계의 주요 사업내용 입력결과서와 전년도에 기 구축된 준비단계 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용 확인 및 DB 구축업무 수행
 - 입력 대상은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이미 준비단계 사업정보 DB가 구축된 사업으로 함
 - 시기는 지방재정의 추진과정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예산 집행결과인 결산서(차년

- 도 5월말)가 작성되어 제출가능한 시점으로 함
- 당초에는 매뉴얼 상으로 분기별로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구축되더라도 준비단계의 사업정보가 1년 단위로 구축되므로 기간을 세분화한 주요 사업내용의 활용성이 낮으며, 업무만 막대하게 증가하므로 연 1회만 실시함
- 만약, 사업정보 입력결과서 상에 불명확하거나 부실한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LIMAC이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사업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 입력은 준비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함
 - 사업정보 입력결과서를 기반으로, LIMAC이 직접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을 통해 DB를 구축 → 지방자치단체별 DB구축 결과 통보 → 자치단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내용 확인 및 사업등록 확정
- 구축된 준비단계 및 추진단계의 사업정보 DB를 기반으로 자가진단(1차평가) 및 종합검토(2차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집행단계의 사업정보에는 조건부 이행여부, 자가진단 결과, 투자심사 이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다. 완료(준공)단계의 사업정보 DB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매뉴얼에는 사업이 추진되어 최종적으로 준공된 시설물을 등록하는 단계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있지 않음
- 최종적으로 공사 및 사업이 준공되고,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정보가 확정되는 단계로서,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의해 구축되는 DB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력관리 대상 사업의 적용 시점은 2013년 투자심사 통과사업이므로 이미 완료된 사업이 다수 존재함
 - 완료단계 사업정보 항목을 설정하여 2019년부터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3. 이력관리 범위의 재설정

- 사후관리단계의 사업정보 수집의 한계
 - ‘사업준비단계’의 사업정보 기준인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제 준공 후의 운영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 ‘사업준비단계’와 ‘사업추진단계’에서는 하나의 사업단위로 정보입력이 가능하지만, 사업 준공 이후에는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분리되거나 시설별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운영시설별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음
- 사후관리단계의 사업정보 수집 불가에 따른 평가 제외
 - DB구축의 한계와 더불어 민간위탁, 분양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어렵고, 제출하더라도 ‘사업준비단계’에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함
 - 도로사업과 같은 유형의 사업은 사업운영단계 정보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 측정(ex, 지방도 5km구간에 대한 통행량) 또한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따라서 향후 별도의 제대로 된 사후관리단계(시설운영단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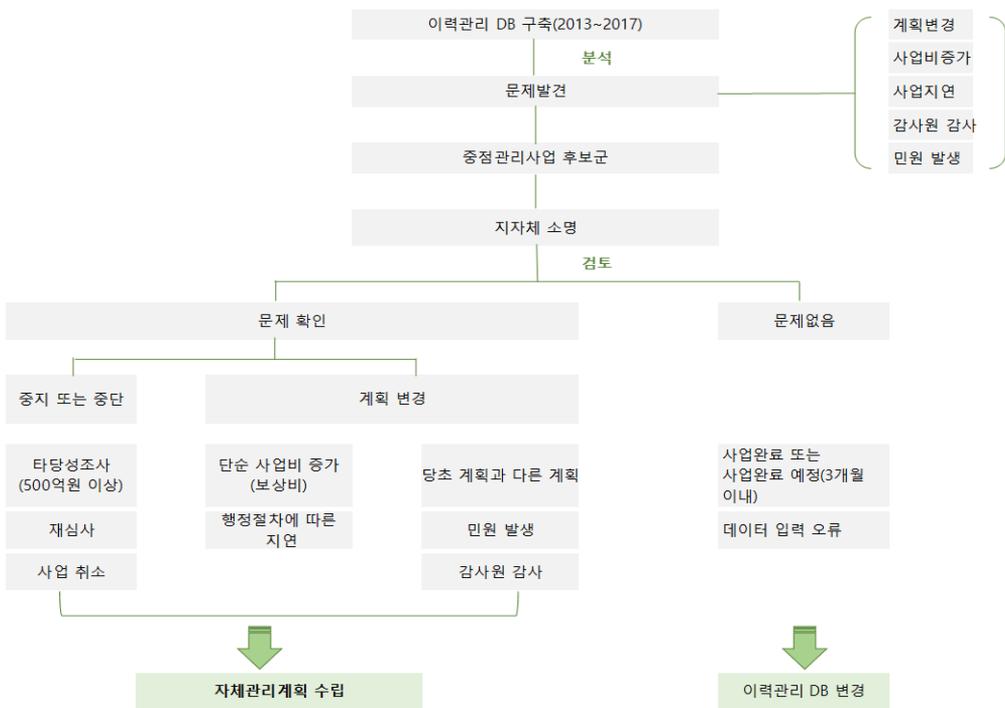
제3절 기타 제도개선 제언

1. 내용변경 사업의 관리 강화

-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 공식적인 절차없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 결정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드러낸 사안임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의사결정이라고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를 구성하는 일원이며, 그 의사결정이 그때그때의 논리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사업계획(투자심사 단계) 당시와 달라진 여건으로 인해 사업을 변경하거나, 향후 불거질지도 모르는 과잉투자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의사결정임
- 다만, 현재는 투자심사의 사업정보만 확인가능하며,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사업부서 이외에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다음의 제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 중 변경된 사업계획(2단계심사 포함)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승인
 - 사업 추진 중 중단 사업(재심사 대상 포함)에 대한 중단/취소 승인
- 매년 수행하는 이력관리를 통해 내용 변경 및 중단 사업 확인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변경된 사업은 이를 수용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력관리
- 사업중단 영향의 최소화 방안은 결국, 정책일관성의 훼손과 정부 및 자치단체의 신뢰성 저하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임
- 이를 위해, 투자심사 통과 이후 사업 추진 과정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이력관리 업무 수행 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만약 이의 수행결과가 불성실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 사업의 심의단계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또한, 사업 중단에 의해 특정 이해당사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주체들이 그 피해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입주희망기업들의 투자결정 변경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

[그림 V-13]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자체관리계획 업무 세부 절차



2. 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조정

가. 투자심사 제외사업

1) 심사 제외사업 현황

- 심사규칙에 의거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21개)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제외하고 있으며,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 헬기구입,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V-3> 심사 제외 대상사업 리스트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포함시기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008.08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008.08
3.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008.08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2008.08
5. 발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008.08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008.08
7.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008.08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2008.08
9.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국토교통부)	2008.08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국토교통부)	2008.08
11. 철도건설목 개량사업	「건설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2008.08
12.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2008.08
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2008.08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2008.08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2008.08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2008.08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포함)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하천법」(국토교통부)	2008.08
18.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2008.08
19.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08.08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008.08
2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환경부)	2014.11
또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수도법」(환경부)	2015.12

- 심사제외 대상사업 21개 유형 중 20개는 2008년 8월 심사제외 대상사업 별표가 신설될 당시 포함된 사업이며, 이후 2014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201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킴
 -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LIMAC에 타당성 조사 의뢰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심사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고는 기본계획을 변경해 면제받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또한, 기본계획에 단순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면제해야 하는지는 추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는 이력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2013년 추진할 당시 상·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라도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2017년 이력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다수 있음
 -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총 943건이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총 162개로 그 중 상·하수도 분야는 118개로 대상사업의 12.5%임
 - 전체 분야 중 상·하수도 및 수질이 11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 및 도시(부문 : 국토 및 지역개발)가 117건(12.4%)으로 많았음

2) 투자심사 제외사업의 이력관리 대상 포함

- 『2017 투자사업 이력관리 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에 따르면 2017년 중점관리사업(27개) 리스트에서 상·하수와 관련된 사업은 3건으로 11.1%를 차지하고 있음
 - 복정제2정수장 전면개량공사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포함되었으며, 국비지원계획 취소로 지방비가 52.59% 증가함
 - 청주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역시 국비 전액 삭감되었으며 지방비가 303% 증가함
 - 청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공법선정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
 - 또한, 중점관리 후보사업(67개) 중 상하수도 관련 사업은 9건으로 13.4%임
 - 이처럼 2013~2016년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을 분석한 결과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인 상·하수도 사업이 이력관리 대상, 중점관리사업 및 중점관리후보사업에서 11~13%를 차지하고 있어 이력관리대상사업 유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무엇보다 투자심사의 주목적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임
- 투자심사 면제사업도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이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준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따라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심사 의뢰서에 준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이후의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관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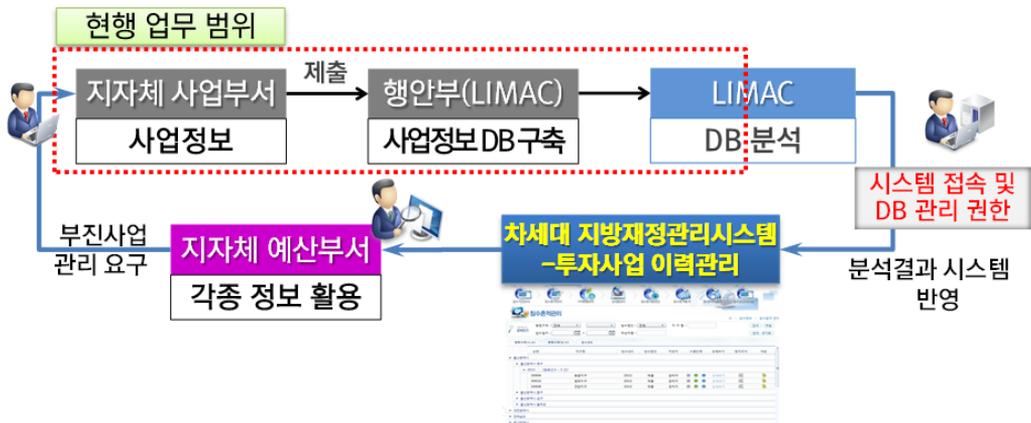
나. 시도심사 및 시군구심사 대상 사업

-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총 심사건수는 4,851건, 금액은 49조 8,285억원이며, 심사기관별로 중앙심사 592건, 시도심사 1,603건, 시군구심사 2,656건임
 - 중앙 : 기초 100억원, 광역 200억원, 행사 30억원 이상
 - 시도 : 40~200억원 미만(행사 30억원 미만)
 - 시군구 : 20~40억원 미만(행사 3억원 미만)
- 2017년 심사결과 적정 2,170건, 조건부 2,230건, 재검토 등 385건임
 - 적정 등 승인은 중앙 422건(71.3%), 시도 1,346건(84.0%), 시군구 2,164건(99.1%)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호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의 2항을 살펴보면,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은 투자심사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다만, 현재는 제도도입 초기로서 모든 투자심사 통과사업을 이력관리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과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력관리 제도의 취지가 당초 투자심사 시에 수립된 계획대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이력관리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전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면, 시도심사와 시군구심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이력관리 성과물 제공 업무 반영

- LIMAC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 업무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업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력관리 대상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15건이 대상이 되므로 이에 준하여 매년 신규로 이력관리해야 할 사업이 발생함
 - 현재 이력관리 업무의 범위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자체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함
 - 이는 행정안전부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관여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는 오해의 소지를 발생시킴
 - 또한, 투자사업의 사업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한 내용만 언급되고 있고 수집된 DB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방대한 사업정보 DB의 분석 성과물을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 효율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업정보 ①DB구축 및 ②DB분석 업무와 더불어 ③분석 결과물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 반영
 -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출된 투자사업 관리정보에 대하여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담당 공무원의 용이한 정보 접근성과 사업관리 Tool 제공

[그림 V-14] 이력관리 제도 완성을 위한 정보제공 업무 반영의 개념도



〈표 V-4〉 단계별 업무 및 수행 절차

구분		절차	수행주체
현행 이력 관리 업무	사업정보 DB구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계 사업정보 입력 요청 ※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행안부→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단계 사업정보 입력양식 제출 ※ 결산서 기준 추진내용 반영 	지자체→LIMAC
	사업 검토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진단 결과 제출 ※ 추진단계 사업정보 입력양식에 포함 	지자체→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관리 사업 총괄표 제출 ※ 총괄표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검토 	행안부/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행안부/LIMAC→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 	지자체→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행안부
	사업 관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사업 선정 	행안부/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관리계획 수립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관리계획 검토 	행안부/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 공개 	행안부
신규 업무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보DB분석을 통한 시스템 이용자(지방자치단체 등)별 맞춤형정보 제공 	LIMAC 분석 → 시스템 반영

4.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 이력관리 업무는 단년도의 업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별로 매년 연속적으로 사업정보 DB가 구축되고, 이를 토대로 중점관리사업 선정, 자치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DB에 반영하여 함
- 게다가 매년 추가되는 사업의 수와 자치단체 사업담당자의 변동 등은 이력관리 업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투자사업 관련 정보 수집(입력) ⇒ DB 구축 ⇒ 자료 가공 및 분석(중점관리사업 선정 등) ⇒ 표출(각종 정보 제공) ⇒ DB 유지관리』의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e-호조시스템으로 한계가 있음
 - 대상 사업수, 업무별 관련 당사자(자치단체 사업 및 예산부서, 행정안전부, LIMAC), 매년 DB갱신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업무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 향후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관련담당자(시군구 사업부서·예산부서, 시도 예산부서, 행정안전부, LIMAC)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력관리 업무 체계의 완성도, 구축된 DB의 정보 신뢰성 등 제고 가능
 - 또한,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구축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수요자별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력관리 제도의 본 취지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핵심정보(사업정보)’는 투심 통과 기준 사업 주요내용(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투심 결과, 조건부 등), 사업 추진 과정 상의 주요 내용(실제 투입된 사업비, 조건부 이행 여부 등) 등 1차적인 사업의 주요내용을 의미함
 -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수요자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집된 ‘핵심정보’를 분석·가공하여 2차적으로 도출된 정보를 의미함

제 VI 장 결론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심사 통과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 지연·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자치단체 재정운용 차질 및 손실 발생으로 연결됨
 - 이는 투자심사,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가 부족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함
 - 한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업 준공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잦은 사업담당자 교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에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16년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했으며, 사업 단계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투자심사 통과 이후의 재정투자사업의 사업정보(DB)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DB 입력에서부터 중점관리사업 선정, 자체관리계획 수립까지 이루어지는 이력관리 업무 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안별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심사규칙 제9조의2(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등) 1항(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와 2항(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행체계를 구체화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심사규칙과 매뉴얼 간 상호연계성 부족에 따른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며, 수행체계를 구체화한 내용을 반영한 매뉴얼이 필요함
- 사후관리단계는 타 부처 실태조사 및 점검 등과의 중복성 문제, 투자심사단계 계획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 사업의 효과 및 성과 측정의 문제, 복합사업의 경우 추진단계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공사 시에는 시설별로 진행하며 운영 주체 또한 다양함에 따른 정보 수집의 한계 등으로 이력관리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 LIMAC은 매뉴얼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것을 근거로 이력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업무이며, ‘이력관리’는 투자심사가 통과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에서부터 사업준공까지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성격이 다름
 - 또한, 이력관리를 위한 사업정보 접근 및 수집 권한, 중점관리사업 선정,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이행결과 검토 등의 업무수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LIMAC을 공식적인 ‘이력관리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력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e-호조시스템에 입력했던 방식에서 입력정보의 신뢰성 결여, 관리업무 수행체계의 한계 등을 개선하는 방안 제시
 - 이력관리 DB 작성을 위한 사업별 입력 양식과 사업별 엑셀파일을 DB화하기 위한 ‘이력관리 DB구축 시스템’을 개발함
 - LIMAC이 구축한 DB는 추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e-호조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함
-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매년 연속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설정된 사업정보를 전면 재검토하여 항목을 추가·세분화·간소화·삭제·유지 등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개편함
 - 현행 심사규칙 및 매뉴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분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

- 투자심사 통과 이후 과정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
 - 매뉴얼 상, 자체평가 및 중점관리사업 선정 가능하도록 구성
 - ‘사업준비단계-추진단계’, ‘사업준비단계-준공단계’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구성
 - 기술적으로 DB 설계 및 구축 가능하도록 구성
- 매뉴얼 상 추진단계의 사업정보 입력시기 및 기준시점 미제시로 업무 수행 시 혼란 야기함에 따라, 추진단계의 주요 사업내용은 결산서 기준으로 하며, 입력양식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이력관리 업무 특성 상, 사업정보 DB 구축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나, 매뉴얼 상으로 입력 주체만 간단히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관리 체계(주체 포함)가 제시되지 않음
- 이에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준비단계 사업정보 및 결산서 기준 추진단계 사업정보 DB를 구축하도록 행정안전부가 LIMAC에 요청하고, LIMAC이 오류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최종 DB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 투자심사 통과 및 예산편성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DB로 구축 및 갱신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및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사업 추진 중 변경된 사업계획(2단계심사 포함)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승인 절차, 사업 추진 중 중단 사업(재심사 포함)에 대한 취소 승인 절차, 업무 비협조 자치단체에 대한 처리 방안 등 마련 필요
 - 현행 중앙투자심사 위주의 대상사업에서 시도 및 시군구 심사 사업, 투자심사 면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정보 DB를 가공·분석하여 자치단체의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정부부처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 필요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체계가 구축된다면, 이력관리 제도의 본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투자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서 사업담당자가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사업 효과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됨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LIMAC은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 업무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업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이력관리 업무의 범위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자체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함
 - 이는 행정안전부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관여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는 오해의 소지 발생
 - 또한, 투자사업의 사업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한 내용만 언급되고 있고 수집된 DB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방대한 사업정보 DB의 분석 결과물을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 효율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업정보 ①DB구축 및 ②DB분석 업무와 더불어 ③분석 결과물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 반영
 -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출된 투자사업 관리정보에 대하여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담당 공무원의 용이한 정보 접근성과 사업관리 Tool 제공
-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업무담당자의 맞춤형 정보 활용성 향상을 통해 투자심사 통과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지방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 고 문 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투자사업 이력관리 보고서』, 2017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17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2018.10.16., 일부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9호, 2017.12.29., 일부개정)

구분	기존(E-호조)		변경(엑셀)				비고
투자사업 준비단계	사업량	사업량	사업량	(공통) 부지면적			세분화
				주요사업내용			
	연면적						
	층수						
	길이(도로사업)						
	폭원(도로사업)						
	세대수(주택사업)						
	시설용량(환경사업)						
	기타(유형/단위)						
	분야별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기타	총사업비	총사업비	공사비		추가
					보상비		
					운영설비비		
					용역비		
					예비비		
	운영계획	지출(인건비/시설운영비) 수입(입장료/사용료) 분양금액 분양률	총사업비 및 운영비, 수입	운영비	운영인력(명)		추가
인건비					세분화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타					세분화		
사용료							
입장료							
임대료							
기타							
재원별 사업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예산외	재원조달계획	분양수입	분양가격		세분화	
				분양면적			
				분양시점(연도/월)			
				분양종료시점(연도/월)			
				연도별 분양률			
				국비(부처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예산외							
투자사업 추진단계	담당자	자치단체장 실무부서담당자 연락처	사업량	지방채 기발행액		세분화	
				지방채 신규발행액			
				발행연도/거치·상환기간/상환시점			
	입력시점(연도/분기)						
	부서명						
	작성자						
	연락처						
위치	사업위치(시도/시군구/읍면동)						
사업량	사업별 해당항목	(공통) 부지면적					
		주요사업내용					

구분	기존(E-호조)		변경(엑셀)		비고	
투자사업 추진단계			투자사업 추진단계	사업량	연면적	
					총수	
	길이(도로사업)					
	폭원(도로사업)					
	세대수(주택사업)					
	시설용량(환경사업)					
	기타(유형/단위)					
	사전철차 이행결과	투자심사 의견 이행현황	투자 심사	투자심사 의견 이행현황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기본계획	투자사업 추진단계	일정 (예정, 실제) 정보	기본계획(연도/월)	
		실시설계			실시설계(연도/월)	
		보상			보상(연도/월)	
		공사-기반조성			착공(연도/월)	
		공사-상부시설			준공(연도/월)	
	감사원감사결과			자체평가항목과 중복	삭제	
분야별 사업비	공사비	투자사업 추진단계	총사업비 및 자체 평가 정보	공사비		
	보상비			보상비		
	설비비			운영설비비		
	용역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			
			자체 12개 항목 입력란 평가 (이행여부/기재사항)	추가		
재원별 사업비	국비	투자사업 추진단계	재원 조달 계획	국비(부처별)	세분화	
	시도비			시도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지방채			지방채		
	민간자본			민간자본		
	기타			기타		
	예산외		예산외			
시설별 기록	시설명	공공 시설 별 기록 및 사 후 관 리 단 계		시설명		
	시설유형			시설유형		
	시설구분			시설구분		
	최초건립일					
	운영개시일					
	사용여부					
	우편번호					
	기본주소					
				운영방식	추가	
				운영관리자	추가	
	운영관리인력	추가				
	자산소유현황	추가				
담당자	작성자					
상세주소	위치(시도/시군구/읍면동)					

구분	기존(E-호조)		변경(역셀)		비고		
사 후 관 리 단 계	개요	시설명		자산소유현황			
		자산소요현황		자산가액			
		자산가액		내용연수			
		내용연수 공개여부 건립일 운영개시일			최초건립일(연/월/일)		
					운영개시일(연/월/일)		
					총 사 업 비	공사비	추가
						보상비	
						운영설비비	
						용역비	
						예비비	
					기타		
					재원 조달 계획	국비	추가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예산외				
	시설규모	시설명		작성회계년도			
		토지면적		(공통) 부지면적			
		건물면적		연면적			
		규모		층수			
				층수			
		시설내용		길이(도로사업)			
				폭원(도로사업)			
			세대수(주택사업)				
		최대이용가능인원	시설용량(환경사업)				
		기타(유형/단위)					
운영현황	시설명		운 영 비	인건비	세 분 화		
	지출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수입		운 영 수 입	사용료	세 분 화		
				임대료			
				기타			
		누적분양률(%)	추가				
	연간이용인원						
	연간운영일수						
	운영주체						
지방채 상환현황	시설명						
	총발행액		지방채 총발행액				
	기상환액		지방채 기상환액				
	향후 상환계획		상환계획(연도별 입력)				

<부록 2> 이력관리 관련 심사규칙 및 매뉴얼의 주요내용

제9조 의2	심사규칙		매뉴얼	
	①항	②항	10.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실시	10-1. 투자사업 이력관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p>■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p>	<p>■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하고,</p> <p>■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 자치단체별로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투자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표해 투자심사 내실화 도모</p>	<p>■ 투자심사 완료 후 투자사업의 핵심정보를 이력관리하고</p> <p>■ 이를 평가하여 재정손실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p>
대상 사업	<p>- 투자심사를 수행한 모든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 중앙 투자심사 • 시·도 : 시도심사(자체심사 및 시·군·구 의뢰심사) • 시·군·구 : 자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중에서 통과(적정, 조건부)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 투자심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규칙 ②항의 대상 사업 중 투자심사 통과(적정, 조건부) 사업
수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주체(시군구 및 시도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정보 입력 : 사업 주관 자치단체별 관리(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1차평가 :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예산부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2차평가 : 행정안전부 - 관리계획 수립 :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평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시기 : 매년 1회 - 평가방법 : 자치단체 교차 평가 또는 자체평가 - 대상기관 : 시·도 및 시·군·자치구 - 주요평가항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평가(자체평가) • 주체 : 사업 주관 자치단체(예산부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대상 : 이력관리 대상 사업 • 사업비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2차평가 대상

제9조 의	심사규칙		매뉴얼	
	①항	②항	10.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실시	10-1. 투자사업 이력관리
평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반영을 • 미심사 사업예산 반영률 • 재검토·부적정사업 예산 반영률 • 조건부사업 조건이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 - 2차평가(자체평가) • 주체 : 행정안전부 • 대상 : 1차 자체평가 결과 '2차평가대상 사업'으로 제출된 사업 • LIMAC의 사업평가 절차,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리계획 수립대상 결정